

목 차

I. 총론	1
1. 온천법의 목적	3
2. 정의	3
3.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13
4. 국가 등의 책무	15
5. 온천협회	17
II.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21
1. 온천의 굴착	27
1-1. 온천굴착신고	27
1-2. 토지의 원상회복	29
1-3.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33
2.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36
2-1. 온천발견신고	36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37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40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42
4. 온천개발계획	46
4-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변경·취소	46
4-2. 온천개발면적	53
4-3. 타법과의 관계	53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58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60

III.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63
1. 온천의 이용허가	65
1-1. 온천의 이용허가	65
1-2. 일시이용 허가	70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71
2. 온천의 보전·관리	75
2-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75
2-2.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76
2-3.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78
2-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81
2-5.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82
2-6. 온천의 공동급수	84
2-7. 기타사항	85
IV. 수수료 및 벌칙 등	87
1. 처리기간 및 수수료	89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89
3. 벌 칙	90
4. 과태료	91
V. 참고사항	93
1. 온천전문검사지침	95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141
3. 온천법령집	155
4.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35



I. 총론

1. 온천법의 목적
2. 정 의
3.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4. 국가 등의 책무
5. 온천협회

1 온천법의 목적 (법 제1조)

▶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생활시간의 증대 등으로 관광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온천이용 인구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온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
- 이에 따른 온천원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구히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인 온천의 개발·이용·관리를 위하여 보양온천 및 온천도시의 지정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2 정 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라 함은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온 천

- 물은 지표수, 지하수, 광천수 및 온천수로 대별할 수 있으며
- 온천법에서의 온천은 지하에서 물이 솟아날 때 지표상의 수온이 25℃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질은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광물질 등의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용출량은 본래의 자연이 용출하는 수량으로 의미하지만 인공적으로 인력이나 동력을 이용하여 퍼 올리는 것도 포함해서 지중에서 지표로 끌어내는 수량이라는 의미로 넓혀서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어느 깊이에서 위로 펌프의 힘을 빌려서 퍼 올렸다고 해도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온천수는 역시 자연적으로 용출하고 있는 것이어서 펌프를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온천수의 유동에 관련한 본질적이 아니기 때문임

※ 온천성분(수질) 적용기준(영 제2조)

-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함
 - 각 호의 성분기준(먹는물 기준의 건강상 유해물질 3종)
 - 1. 질산성질소($\text{NO}_3\text{-N}$)는 10mg/L 이하일 것 - I 급상황
(무기비료사용,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폐수에서 발생)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_2Cl_4)은 0.01mg/L이하일 것 - II 급상황
(유해화학 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세정제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3. 트리클로로에틸렌(C_2HCl_3)은 0.03mg/L이하일 것 - II 급상황
(금속세정제, 드라이클리닝용제, 소화제 등으로 이용 후 환경으로 배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성분에 대한 성분검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토록 함(온천전문검사 지침에 명기)
- ※ I 급상황 - 건강에 단기간내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24시간내 주민 공고 실시)

Ⅱ 급상황 - 건강에 단기간내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며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공고 실시

- 음 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 목욕용 : 온천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별표3] 적용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욕수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구 분	온천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원 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색도 5도 이하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8.6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이하 - 총대장균군은 100㎖ 중에서 무검출
욕조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탁도는 1.6NTU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ℓ 이하 -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 이하

※ (음용수질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플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1mg/L(샘물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셀레늄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보론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트니트릴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트니트릴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트니트릴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300mg/L(먹는샘물의 경우 500mg/L,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증발잔류물은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카. 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망간은 0.3mg/L(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하.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온천우선이용권자 (법 제23조)

- 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②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된 것임
- ③ 법률 제7856호(2006.3.3.개정) 시행전(2006.7.1.) 온천발견신고 당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음

이유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료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 (법제처 해석 07-0364)

☞ 온천지침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을 경우 】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신속·원활한 온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토지굴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의 이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알선 등 필요한 지원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참고] 온천공 소유권

온천법에서 온천권 등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온천공은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의 것임.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이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한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할 경우 그 시설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해석사례 1

-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법 제2조제2호) (법제처 해석 07-0364)

[질의요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회 답]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님

[사 유]

-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령해석사례 2-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법 제2조제2호)** (법제처 해석 08-0430)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음

[사 유]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합니다.
-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관련된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1. 4. 27. 시행된 것과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본문에서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고, 단서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 소유권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였으며, 개정 온천법 제23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 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라고 규정한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개정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인데,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는 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토지를 이전 받은 자가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를 추가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둔 바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명시적으로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없다면,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허가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온천의 적절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 위 개정 규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 후의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법 제7조, 규칙 제4조)

○ 법 제7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록기준 증명서류

○ 등록기준

✓ 전문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 장 비

-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 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
- 수위측정장비 / 수량측정장비 / 야외수질분석장비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영업정지(1차 6개월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 감독상 명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 미이행

- 등록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조사·검사 종류

검사시기	종 류	내 용	관련규정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조사	온천자원 부존가능성 확인조사	법12조③ 영13조①-4
온천발견신고 수리시	온천공조사	온천의 수온, 수량, 수질 등	법21조② 규칙13조①② [별표 5]
	온천공영향조사	인근공에 대한 영향조사	규칙13조②-3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시, 온천이용허가시	온천자원 평가조사	온천원 보존실태 및 상황변화 온천의 온도, 수질, 성분 (지구내 1일 적정 양수량)	법10조 영7조 규칙5조
			지구
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정기온천 자원조사 성분분석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수질·성분변화 등 온천의 특성 (온천원 1일 적정 양수량) ※ 온천원보호지구는 지구내 모든공 일제조사 실시 주요성분, 온도, 이용에 따른 효과, 주의사항	법16조 영17조 규칙10조
			법24조② 규칙15조① 법19조①
매 1년마다	수질검사 특정 성분분석 (유황, 유리탄산)	수질 적합여부, 성분함량, 금기증, 주의사항	법19조 규칙12조 [별표4]

[참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2011.3.1 현재)

연번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00.10.10	031)420-3732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호완	대전 유성구 가정동 30	00.10.10	042)868-3085
3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00.10.10	02)840-3578
4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 6-2	00.10.10	042)870-7641
5	한국중앙온천연구소	이종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우림 라이온스 2차 303호	00.12.28	02)2027-3470
6	(주)하나 엔지니어링	이정락	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 954-6 성지스타워드 803호	00.12.28	031)345-0507
7	(주)한국건업 엔지니어링	성종수	경기 광명시 하안동 34-11 삼호빌딩 7층	00.12.28	02)894-2472
8	(주)세기종합기술공사	민봉기	충남 아산시 온천동 1487	00.12.28	02-578-5001
9	중앙건설턴트(주)	김해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8-1	08.8.26	02-2156-6031

4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법 제3조의2)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지자체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기관별 온천정책 추진

○ 중 앙

- 온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 온천협회 승인 및 지도관리
- 국민보양온천 지정승인 등

○ 시·도지사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 고시,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 온천개발계획 승인, 국민보양온천 지정 등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발견신고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고시
-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보호지구 신청, 온천이용허가
- 정기온천자원조사(5년마다), 수질 및 성분검사, 출입검사 등

※ 온천협회

- 온천종사자 교육
- 시·도지사, 시장·군수 위탁사업(온천자원조사, 연구사업, 수질·성분 검사 등)
-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온천 관리 정보체계 구축
- 온천시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발견신고자,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종사자의 위탁사업
· 온천공검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수질·성분검사 등

5 온천협회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영 제21조, 규칙 제19조)

-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 협회는 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

□ 협회 설립절차

- 온천종사자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 ※ 정관변경시에도 동일함
-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성립

□ 정관의 기재사항

- 설립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절차

[참고]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설립현황

1. 설립 인가일 : 2007. 7. 11
2. 사무실소재지 : 서울 종로구 당주동 2-2. 영진빌딩 301호
3. 전 화 번 호 : 02-720-5004 (팩스 : 02-723-5003)
4. 임 원 구 성 : 23명(회장1, 명예회장1, 고문3, 부회장3, 감사2, 이사13)

□ 협회의 사업

-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온천 자원조사·연구사업(수질·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온천관리정보체계 구축
- 온천발견신고자,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종사자의 위탁사업
 - 온천공검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수질·성분검사 등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 제26조, 규칙 제19조)

-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종사자 교육을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별 교육책임자 지정 후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이수 가능
- 교육시간 : 연간 4시간(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 포함)
 -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온천종사자 교육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전의 위생교육은 제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전 위생교육 이수토록 규정)

[참고]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2010-71호]

1. 교육 실시기관 :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2.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3. 교육내용
 - 온천법령 해설, 온천기준과 온천자원, 온천개발절차 및 규제사항, 온천검사·온천이용허가·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 온천서비스 향상, 온천종사자의 책무, 온천행정 등
4. 행정기관 협조사항
 - ① 교육유예자 등 명단 협회 통보(시장·군수) : 교육예정일 10일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 법령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가능
 - 교육교재 숙지로 교육을 갈음하는 경우(도서·벽지 등 온천종사자)
 - ② 온천이용허가자 등 협회 통보(시장·군수) : 15일 이내
 - 신규 온천이용허가, 허가자의 지위승계, 이용허가 취소 신고내용
 - ③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지원
 - ④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협회장 교육 종료 후 시장·군수에게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 보고
 - 불참자 사실관계 확인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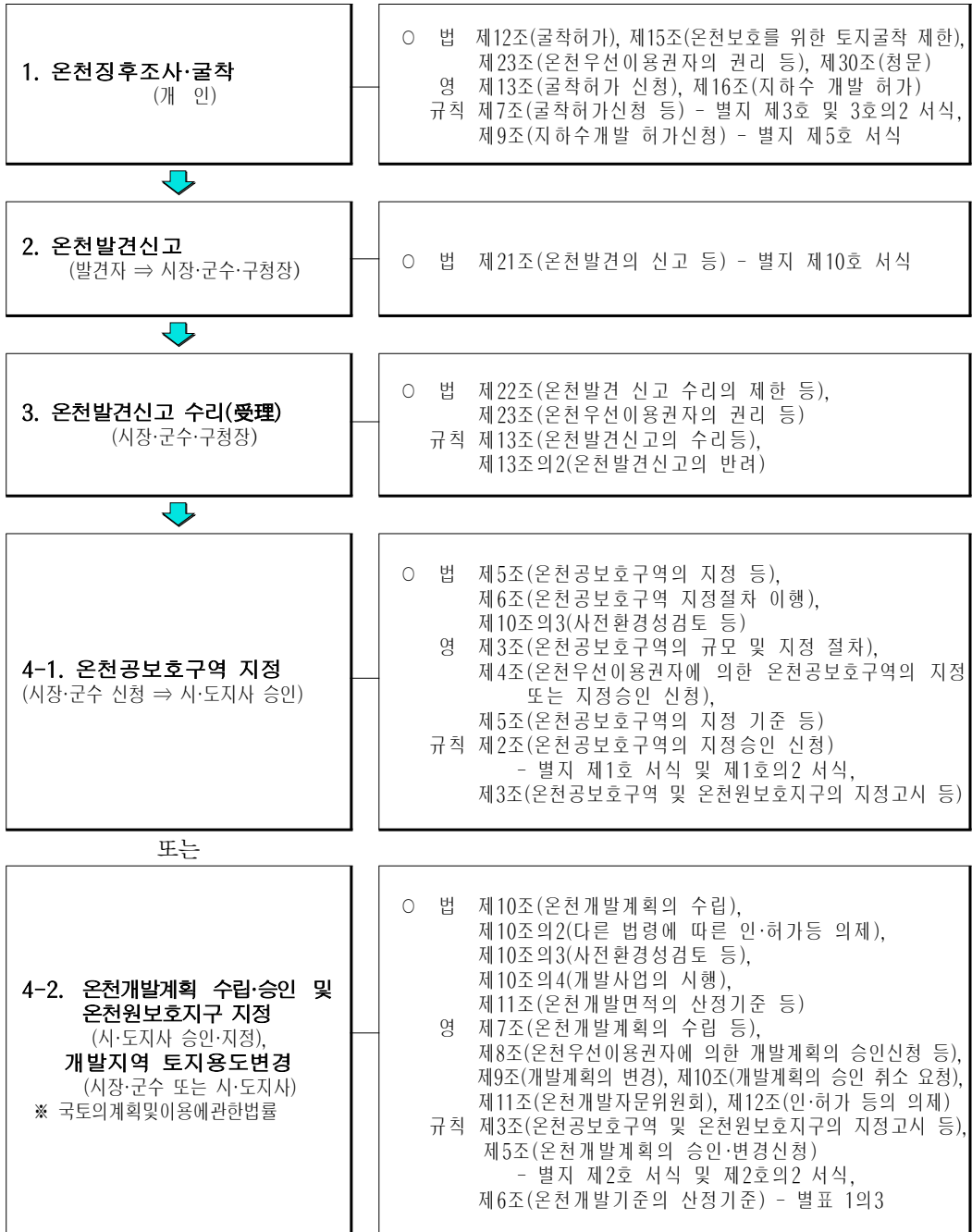


Ⅱ.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1. 온천의 굴착
2. 온천발견신고 및 취소
3.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4.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



□ 온천개발·이용·관리법규





5. 동력장치 설치 허가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법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영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 규칙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6.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 영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 규칙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의2(온천표시) - 별표 2,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 별표 3,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별표 4, 별지 제9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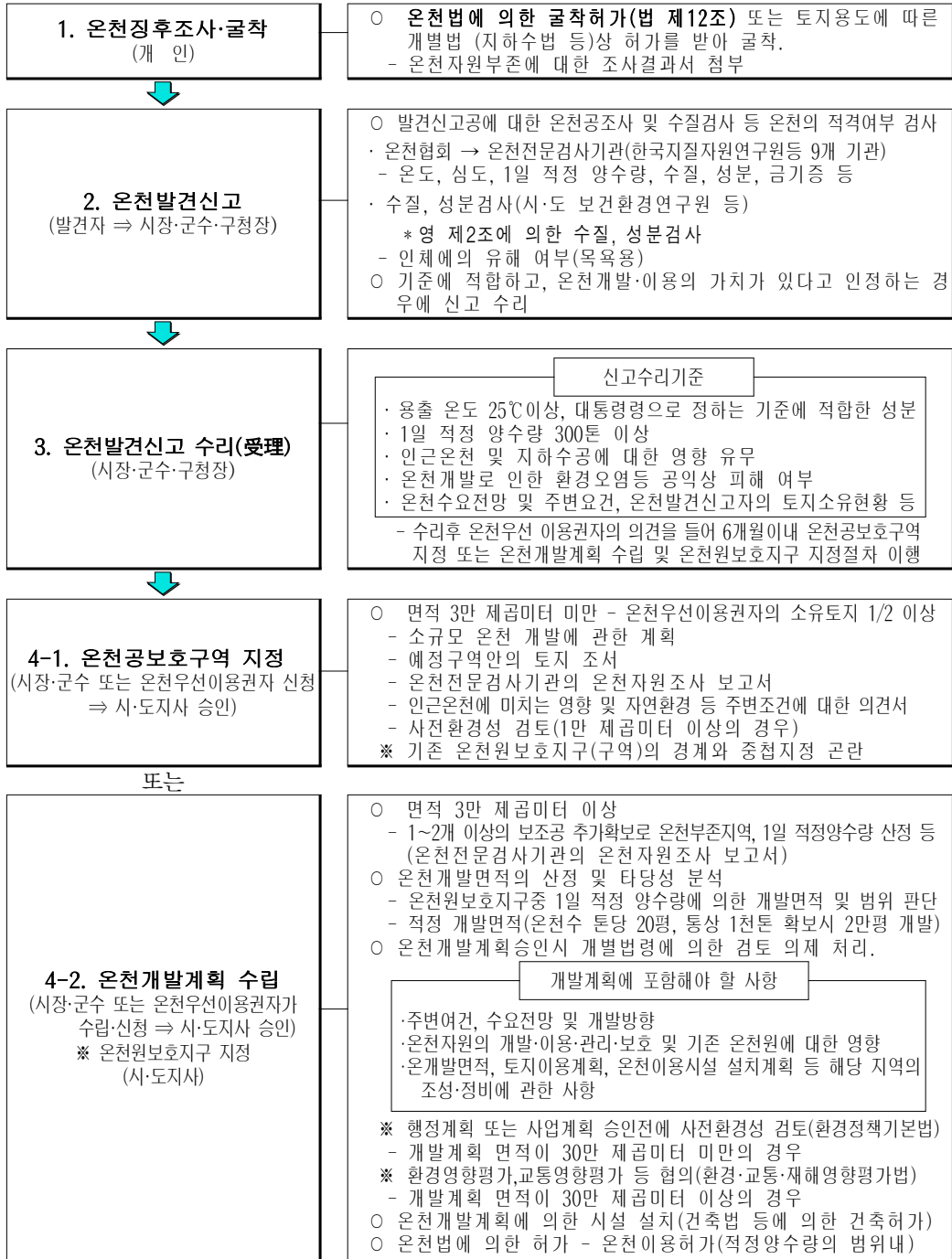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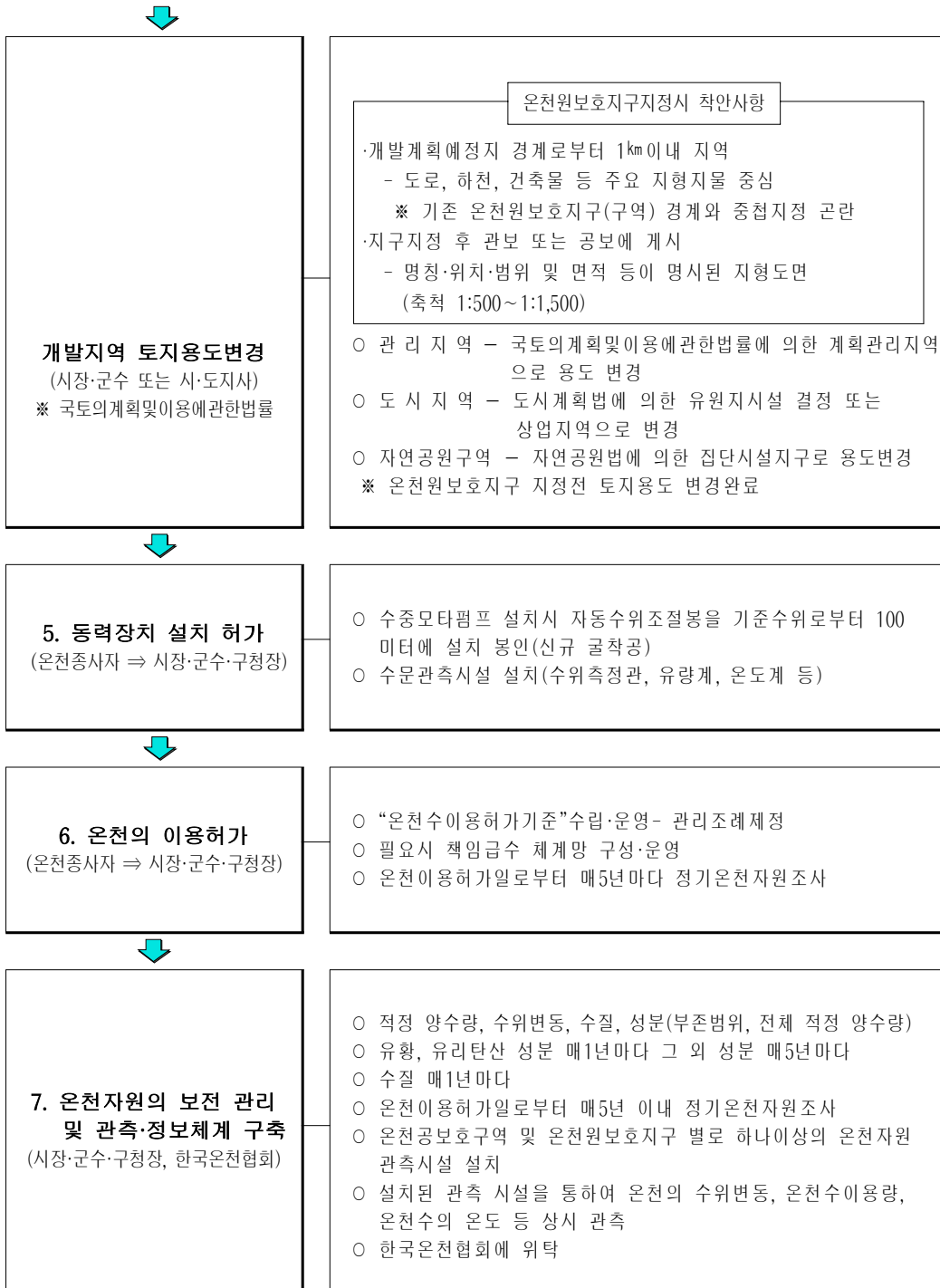
**7.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정보체계 구축**

(한국온천협회,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제25조(출입검사 등)
- 영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 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별지 제11호 서식,
제17조(허가증의 교부) - 별지 제12호 서식,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별지 제13호 서식

□ 온천개발·이용·관리절차





1 온천의 굴착

1-1. 온천굴착신고 (법 제12조, 영 제13조, 규칙 제7조)

-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 포함
-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
- ▶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토지굴착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굴착허가의 신청

- 온천굴착허가신청시 준비서류
 - ① 토지굴착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지하수 굴착도중 온천발견시(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 ②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기재
 - ③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④ 굴착계획서(굴착단면도 포함) 및 복구계획서(각각 설계도서 첨부)
 - ⑤ 온천자원부존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지형, 수계 수문조사
- 지질 및 지질구조 조사(물리탐사-전기비저항 수직탐사 등)
- 인근 지역의 온천자료 검토
- 온천부존 여부 및 굴착 계획(심도, 구경, 케이싱 내역)

⑥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등

- ※ 증굴(용출구를 확대하거나 심도를 증가하는 것)인 경우
: 토지굴착허가변경 신청서, 굴착 및 복구계획서(증굴 설계도서)

○ 온천굴착신고 수수료

- 신규굴착 : 공당 6만원, 증굴 : 공당 3만원

〈굴착허가 유효·동의 기간〉

- 굴착허가 : 허가일로부터 1년(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 굴착동의 : 1년이상(연장시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

□ 온천굴착 허가시 검토사항

① 굴착토지 소유여부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굴착신고서 접수시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음
- 동의하지 않을 시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

②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굴착사용동의서 확인

③ 공별 1일 적정 양수량 기준

- 온천발견신고공 : 300톤 이상, 보조공 : 150톤 이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기존 온천공을 폐공하고 대체(代替)공으로 신규 굴착허가 신청하는 공에 대하여는 종전의 허가량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적정 조치하되, 이와 관련하여 1일 적정 양수량이 50톤이하일 때는 가급적 불허가 권고
- 신규 굴착공의 검사결과 1일 적정 양수량이 50톤이상 150톤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특히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 조치바람

※ 온천수량의 제한은 경제성 검토와 특히 온천수의 양수량이 일정한 적정량 미만일 때 온도의 순간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작용(예 : 온도 미달공이 온천공으로 둔갑될 우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기준이상의 양수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보조공 굴착신고시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여부
 - 우선이용권자가 아닌 경우 우선이용권자의 동의서 첨부
 - 우선이용권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순위 우선이용권자(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 동의서 첨부
- ⑤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자원 고갈(수위강하) 여부
- ⑥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자연생태계 영향 여부
- ⑦ 신규공인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 가능여부도 고려
 -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000m이상
 - ※ 추후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지정지구(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1,000m이상 이격해야 함(P39 그림참조)
 - 굴착예정지지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1-2. 토지의 원상회복 (법 제13조, 영 제14조, 규칙 제7조의2)

-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 준용

□ 원상회복 의무

- 굴착한 온천공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한 때
-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온천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참고]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함
 - ① 일단, 적법하게 발생된 효력이 실효사유에 의하여 소멸되고
 - ② 하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 ③ 실효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무효와 다름
- 실효사유
 - ① 행정행위 대상의 소멸
 - ②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 ③ 목적의 달성
- 실효의 효과
 행정행위의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그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효력 소멸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 납부대상 : 토지굴착허가신고자, 지하수개발허가신고자, 온천발견신고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
 - ※ 토지굴착허가자의 경우 원상회복이행 보증금 각서로도 대체가능
- 납부시기 : 토지굴착허가서 수령시, 지하수개발허가·온천발견·온천이용허가 신고시
- 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유가증권 등
-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 예치기간
 - 토지굴착허가의 경우 : 허가일 ~ 온천발견신고수리일 또는 원상회복종료일까지
 - 지하수개발허가의 경우 : 허가일 ~ 이용허가 실효·취소된 후 1년까지
 -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신고일 ~ 온천발견신고수리일까지
 -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허가일 ~ 실효·취소된 후 1년까지
- 이행보증금 반환
 - 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완료했을 때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 되는 때
- 이행보증금이 부족액 및 잔액 처리
 - 시장·군수가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청구
 - 잔액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참고]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호]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 「원가계상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05-7, 2001.2.10)」에 의한다.
2.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제거, 케이싱 등 공벽보호시설물의 제거·절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상부보호공의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어 상부 보호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145,672원

나. 수중모터펌프의 제거

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중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품 명	규 격	개소당단가(원)
우물속의 수중펌프	5.5kw 이하	187,704
	11kw 이하	283,009
	22kw 이하	378,315
	30kw 이하	440,883
	30kw 이상	503,451

다. 케이싱 인발·제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하여 공내에 설치된 우물자재인 케이싱 및 스트레이너 등을 인발·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m당 단가에 케이싱 설치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15,520원

3. 되메움비용은 공내부에 투수성 또는 불투수성물질을 주입하여 공내를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m당 단가에 재료별 되메움 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투수성 재료(모래) 되메움 구간		불투수성 재료(시멘트) 되메움 구간	
구 경(mm)	m당 단가(원)	구 경(mm)	m당단가(원)
50이하	4,235	50이하	4,667
100	4,295	100	6,021
150	4,395	150	8,279
200	4,525	200	11,439
250	4,705	250	15,503
300	4,925	300	20,469
350	5,175	350	26,339
400	5,475	400	33,111
450	5,805	450	40,787
500	6,175	500	49,366

4. 그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cm 두께로 몰탈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9,509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cm)을 토사로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864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 등)의 이행보증금은 허가자가 개발·이용자로부터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아 실비용으로 결정한다.

※ [이행보증금의 가감]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 가감할 수 있음.

1-3.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법 제15조, 영 제16조)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예외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2호)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토지굴착 제한의 취지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인근지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내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은 아니더라도 토지를 굴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온천원에 영향을 주어 귀중한 온천자원이 고갈, 변질 등의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질서한 토지굴착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 이외의 토지굴착

- 온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토지굴착 행위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굴착하는 행위
 - 지역주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는 행위 등

□ 온천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 필요한 조치는 온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굴착행위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예견됨
 - 굴착행위의 금지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 굴착행위의 심도 등의 제한
 - 기타 온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저지·제한하는 행위 등
- 따라서 명령권자는 토지굴착으로 인한 온천원에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임

□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

- 공공시설의 업무용
- 농업용수 공급용
-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냉탕, 샤워시설 등)
- 1일 양수량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 ※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지하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가급적 불허가 조치

☞ 온천지침

[온천원 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지하수 개발 관련]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섭씨 25도 미만의 물)개발의 경우는 온천법시행령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하되,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영업용의 경우는 개발 허가 제한(이용량 1일 30톤 미만의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의 의미에 ‘영업용 용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 ※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이행중에 있고 신고수리된 지역에서 온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이용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한 개발자가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조치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목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천법령에 의한 토지굴착허가를 받아 채수하되, 수질 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하수개발 허가일로부터 1년마다(기간종료 30일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 하기 바람
 -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개발허가시 위의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허가 조치

2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2-1. 온천발견신고 (법 제21조)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1호, 제4호)

· 온천발견 미신고자(법 제12조제4항), 허위신고자(법 제21조제1항)

□ 온천발견의 정의

- 온천발견이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법 제2조에서 정의한 온천의 발견을 의미함
- 온천의 부존가능지역이나 온천징후지역은 온천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온천신고 대상은 아님

□ 온천발견 신고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채수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해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 검사보고서 제출
- 온천발견 신고시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온도, 적정 양수량 등을 기재하여 온천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법 제21조, 법 제22조, 규칙 제13조)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시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와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
 - 신고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 온천발견 신고 수리절차

- ① 온천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 신고공 존재여부
 - 신고공이 있는 토지 소유여부(등기부 확인)
 - 온천발견신고 수리 제한사항 검토
 -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서 반려
- ② 협회의 온천공 조사 보고서
 - 온천발견신고자의 검사비용의 납부 확인
 - ⇒ 검사비용 미납시 발견신고서 반려

온천공조사방법 및 조사보고서 작성항목 (별표5)

1. 온천공 조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조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온도검층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 ※ 인근에 공이 있는 경우 인근공과의 영향유무 조사내용 포함

— <온천공검사기관 선정 및 현장검사 입회> —

-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서류 접수시 온천공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온천전문 검사기관이 온천발견을 위한 시추·굴착을 하지 아니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인지 확인하여야 함.
-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온천공 검사시에는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현지 입회하에 온천수 시료 봉인 및 양수온도 확인

③ 온천발견신고 수리(접수후 10일 이내)

- 검사결과 및 온천의 적정성, 지리적 여건, 지구지정 및 개발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리

— <온천의 개발·이용가치 유무의 판단기준> —

-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 1일 적정 양수량의 판단은 48시간 동안의 양수량중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수위강하는 기준 수위로부터 100m이내
 -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 수위강하량의 95% 회복을 고려
-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 온천수요 전망 및 주변여건
-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인근지역에 이미 온천원보호지구(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온천법령의 취지와 개발절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온천공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수리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 경계가 중첩되지 않는 한 수리가능
- ※ 온천발견신고자는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온천발견신고 수리시까지 발견신고공 및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소유여부 검토)

— <인근 온천공과의 영향유무 판단기준>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공영향조사에 의해 판단
- 기존공(온천, 지하수)과 신규공 수위 영향정도 조사
- 보조공의 경우 영향만큼 적정 양수량 조절
- 타인이 개발한 신규공 및 보조공인 경우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여 2%이상인 경우 원상회복
- ※ 온천공 영향조사의 범위는 수평거리 300m가 적정
- [참고] 온천공영향조사 비용부담
 - 수평거리 300m 이내 : 신규 온천공소유자 100%부담
 - 수평거리 300~600m이내 : 신규 온천공소유자와 민원인 각 50%부담
 - 수평거리 600m 이상 : 민원인 100%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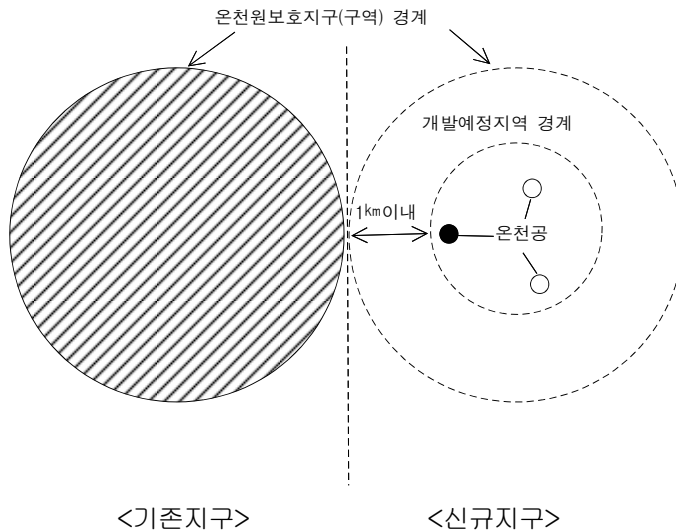
- ④ 신고수리 후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온천개발에 대한 의견제출
 -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
 -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 온천발견신고 수리제한 및 반려사항

-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 온천지침

- 온천발견신고지역이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와 인접한 경우는 기존지구(구역)과의 중첩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견신고공이 기존 지구(구역)의 경계로부터 최소한 1km이상 이격되어야 함



-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아래 지역일 경우
 - 개발 제한구역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을 때 선순위자 신고공이 적합할 때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신고서는 반려
 - 선순위자 신고공이 부적합일 때 선순위자 신고서 반려
- 온천발견신고자가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법 제21조, 규칙 제13조의2)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그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함

□ 취소사유

-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 ※ 개발예정자의 개발의사가 없다면 확인서 징구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사업미착수로 온천공보호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 사업미착수로 그 개발계획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처리절차

-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한 때에는 공문으로 절차이행을 촉구하고, 행정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지역에서 금지사항 >

- 온천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 발견신고자이외의 자에 대한 온천발견신고 접수
- 온천우선이용권자 이외의 온천일시이용허가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의 일원에서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의 신축

☞ 온천지침

- 시장·군수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원보호 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내에서 온천이용시설(목욕장, 숙박시설 등)의 신축허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온천부서와 협의 처리토록함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법 제5조, 법 제6조, 영 제3조, 영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3조)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범위 3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온천발견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 지정목적

- 소규모 온천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온천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정범위

- 온천공을 중심으로 3만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적정면적
- 면적 3만㎡ 이내 : 현행 토지용도의 범위 내에서 개발

【 (중전) 4만㎡ 이내 → (현행) 3만㎡ 이내로 조정한 사유 】

- ▶ 지정범위를 3만㎡ 이내로 축소 조정할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온천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신속한 개발이 가능함
 -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면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 3만㎡ 이상

□ 지정기준

-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토지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 시장·군수가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정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적정양수량 포함)
- 예정구역안의 토지조서·지적도 및 입야도
-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판단은 온천발견신고수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해당되는 경우)에 의함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 ※ 시장·군수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시 서류와 동일

□ 지정승인시 도지사가 고려할 사항

- 적정 양수량·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 ※ 제반여건상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인지의 여부 필히 확인

□ 고 시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관하여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
 -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온천공보호구역이 명시된 지형도면
 - ※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준용
 - ⇒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사용하여 축척 1/500~1/1,500으로 작성
- 온천공보호구역 고시내용 열람(규칙 제3조제2항)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 고시내용을 3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하도록 하여야 함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의 효과

- 온천공보호구역내 효율적인 온천자원의 보호·관리
- 온천공보호구역내 발견신고 수리된 자 이외의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의 신축금지
 - ※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변경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축소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 온천지침 : 1만㎡ 미만 온천공보호구역지정 개발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제외

- 온천법 제10조의3에 따라 온천개발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온천개발계획은 소규모 온천에 대한 간이개발계획 개념으로서 같은 법 규정의 온천개발 면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1만㎡ 미만의 온천개발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사업계획 면적 1만㎡ 미만인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님
 - ※ 다만,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경정책기본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5조)

▶ 시장·군수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행정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6개월 범위내로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4 온천개발계획

4-1. 온천개발계획 수립·변경·취소

(법 제10조, 영 제7조, 영 제8조, 영 제9조, 규칙 제5조)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개발지구 안에 있다면 타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상지역 : 온천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3만m² 이상인 지역**

□ **수립시기 : 온천발견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내**

□ **개발계획의 내용**

-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온천개발계획구역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계획 등
 - 온천수의 이용, 온천이용시설 규모 및 시설의 배치계획 등
-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온천의 보호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반 관리계획

□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온천자원평가조사

-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 온천공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1일 적정 양수량
 - 【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이상인 때 】
 - 최소 2개공을 통하여 확인
 - 【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미만인 때 】
 - 최소 3개공을 통하여 확인
- 온천공의 수위변동 상황
- 온천수의 용출온도 및 성분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온천발견신고공 외의 온천공(보조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보고서에 수록
 - ※ 발견신고공을 제외한 보조공에 대한 온천공영향조사 실시하여 기존공과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양수량 산출
- 온천개발예정지구내의 1일 적정 양수량은 모든 공에 대한 1일 적정 양수량의 합으로 함

□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시장·군수) 구비서류

- 지리적 여건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 예정지구안의 토지 조서
 - ※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축척 1/500~1/1,500)
- 예정지구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계획 예정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 평가 검토보고서

□ 개발계획 승인시 고려사항(시·도지사)

- 온천공 및 온천개발예정지구내의 1일 적정 양수량
-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온천지침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의 신속한 이행】

□ 온천개발면적에 대한 토지용도의 변경

- 온천발견신고수리된 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 산정을 위한 온천굴착허가 우선 조치
- 온천수량을 감안하여 온천개발면적을 확정된 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될 때까지 토지용도 변경 완료조치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시 30,000㎡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토지용도의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절차이행

□ 온천개발계획의 신속한 승인 신청 및 승인 조치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온천으로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하여 발견신고를 수리한 만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 등의 대상이 됨
-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법령의 취지상으로 볼 때 불승인처분해서는 아니되며, 관계 신청자료의 미흡 등으로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 신청토록 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온천지침

□ 온천개발계획 내용이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 처리방법

- 온천개발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승인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의 계획내용의 검토결과 불승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 중 미비되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요구 할 것이며, 불승인 조치는 불가함
- ※ 온천발견신고수리는 온천법령의 제정취지상 온천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온천발견신고수리된 이후에는 반드시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임

□ 온천개발계획의 변경

- 변경승인 신청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 변경승인권자 : 시·도지사
- 변경승인 대상
 - 법 제10조제2항 각호 사항의 변경시(강행규정)
 -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 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상기 사항이 변경되면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온천개발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 없이 계획변경 가능(영 제9조제5항)

☞ 온천지침 : 온천개발면적 또는 시설의 증감시 적용 “예”

-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의 증감없이 온천이용시설, 온천의 채수·이용계획, 부대시설 증감 등 단순한 온천개발계획 변경 필요시 “10%범위 안에서”의 적용(영 제9조 제5항)은 온천개발계획중 온천수 이용허가량 등을 감안한 전체시설면적의 10%를 기준으로 함

□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

- 도시지역 : 유원지시설 결정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
- 관리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 자연공원구역 :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변경

□ 온천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 ※ 단 6개월의 범위내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승인신청서에 각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온천의 우선 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서는 아니됨

□ 온천개발계획의 범위 한계

- 온천개발계획은 온천개발예정지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내의 1일 적정 양수량을 판단하여 산정된 온천채수계획, 온천이용시설 등에 관한 계획임
- 온천원보호지구내의 개발예정지안에서만 수립이 가능하며, 온천원보호지구(개발예정지)를 벗어나서 그 계획의 범위가 미치는 것은 아님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영 제11조)

- 설치목적 : 온천개발계획 수립,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및 등 온천개발에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 설 치 :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둠
- 구성·기능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운영시에도 온천법령·온천업무처리지침의 내용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 가능함

4-2. 온천개발면적 (법 제11조, 규칙 제6조)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 온천개발면적(제공미터) = 66.2×1 일 적정 양수량(톤)
 -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온천이용객 1인당 개발기준면적은 16.55m^2 (5평)
- 온천이용객 1인당 온천수 사용기준량은 0.25톤(250ℓ)
- 1톤 = 4인 사용기준량
- 1톤당 개발면적 = $4\text{인} \times 16.55\text{m}^2 = 66.2\text{m}^2$

계 산 례

- 온천원보호지구(개발예정지) 1일 적정 양수량 1,000톤의 경우 온천개발면적
 $\Rightarrow 66.2\text{m}^2 \times 1,000\text{톤} = 66,200\text{m}^2$
 - ※ 온천개발지역 토지가 온천개발자 소유 토지일 경우 2배인
 최고 $132,400\text{m}^2$ 까지 개발할 수 있음

4-3. 타법과의 관계 (법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의4)

□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 동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수립시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 지구” :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 공원계획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 관광지 등 조성계획·개발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단지개발계획

☞ 온천지침

- 법 제10조제3항중 “온천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타법에 의한 계획지역내에 있는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온천개발시 관련되는 타법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지, 타 법령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여 처리하라는 것은 아님

□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의제처리 대상 : 30개 법률 69개 조항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 있는 30개 법률 69개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인·허가등 의제사항

관계법령	의제사항	법령조문	비 고
30개 법률	69개 조항		
건축법	◇ 건축허가	◇ 제11조	
	◇ 건축신고	◇ 제14조	
	◇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 제16조	
	◇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제20조	
	◇ 건축, 대수선 협의	◇ 제29조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의 허가	◇ 제22조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제30조	
	◇ 지형도면의 승인	◇ 제32조제2항	
	◇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제36조제1항	
	◇ 개발진흥지역의 지정	◇ 제37조제1항제9호	
	◇ 개발행위의 허가	◇ 제56조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86조	
	◇ 실시계획의 인가	◇ 제8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제8조	공유수면 관리법, 공유수면 매립법 폐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제17조	
	◇ 공유수면 매립면허	◇ 제28조	
	◇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제35조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제38조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사업계획 승인	◇ 제15조	
	◇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 제31조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제52조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제54조	
	◇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제55조	
광업법	◇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 제24조	
	◇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제34조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제23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제82조제2항	
농지법	◇ 농지전용 허가	◇ 제34조제1항	
도로법	◇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제5조	
	◇ 도로공사 시행허가	◇ 제34조	
	◇ 도로점용의 허가	◇ 제38조	
사도법	◇ 사도개설의 허가	◇ 제4조	
사방사업법	◇ 벌채 등의 허가	◇ 제14조	
	◇ 사방지의 지정해제	◇ 제20조	

관계법령	의제사항	법령조문	비 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목벌채등의 허가	◇ 제36조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9조 ◇ 제11조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 토석채취허가	◇ 제6조 ◇ 제11조 ◇ 제14조 ◇ 제15조 ◇ 제25조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점용의 허가	◇ 제10조 ◇ 제14조	
수도법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제17조 ◇ 제49조 ◇ 제5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제10조	
자연공원법	◇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 ◇ 행위허가	◇ 제13조 ◇ 제14조 ◇ 제20조 ◇ 제2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의 개장허가	◇ 제27조	
전기사업법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62조	
주택법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제16조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 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제4조	
초지법	◇ 초지전용의 허가	◇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 제1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 제15조제3항 ◇ 제86조제1항	
택지개발 촉진법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제8조 ◇ 제9조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제29조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공사 등의 허가 ◇ 점용허가	◇ 제16조 ◇ 제24조	
하천법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 계획의 인가 ◇ 하천점용허가	◇ 제6조 ◇ 제30조 ◇ 제33조	

□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등

▶ 종전에는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된 온천법('10.2월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토록 함

-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함

□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한 부여

▶ 법 제10조의4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 또는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온천개발의 경우에도 시장·군수에게 수용·사용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원활한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법 제10조의2)

-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함
 -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취소시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당해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 ※ 온천원(溫泉源) : 채취하지 아니한 온천
- ▶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함에 있어서는 협회에 위탁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함
 - 지정·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음
 -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 경계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그 계획의 변경승인 후 지체없이 개발계획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을 하여야 함

- 과도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지구내의 온천우선 이용권자 소유토지,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감안한 온천개발면적, 온천의 부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면적을 대상으로 함
- 지구의 경계는 도로, 하천, 건축물 등 주요지형지물이나 토지의 용도, 지번 등을 감안하여 민원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온천원보호지구의 고시사항

-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 ※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준용
 - ⇒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사용하여 축척 1/500~1/1,500으로 작성
- 온천원보호지구 고시내용 열람
 - 시·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고시한 때는
 - 관할 시장·군수는 그 고시내용을 3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효과

- 온천원의 효율적 보호 및 관리
- 온천개발의 촉진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 및 계획적인 개발
 -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이전에 토지용도변경을 완료하여
 - 이미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계획적인 개발추진

☞ 온천지침

온천원보호지구안에서는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의 신축 금지 및 온천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수립하기 바람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의견제출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이 의견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적합한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온천개발 등 추진 조치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법 제14조, 영 제15조, 규칙 제8조, 규칙 제8조의2)

-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1호)
-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1호)

□ 허가의 운영취지

- 온천은 원천적으로 자연용출 상태에서 이용하여 왔음
-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량의 발달 등으로 온천이용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온천 이용량도 크게 증대
- 많은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해서 동력의 마력이 증가하고 온천공의 심도도 날로 깊어지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한 온천원의 부족 또는 고갈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온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조건하에서 동력사용을 허가
 - ※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 또는 동일성능 이하인 것으로 교체할 경우 허가생략
- 수중모타펌프 설치시 자동수위조절봉을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에 설치·봉인(신규굴착공)

□ 동력장치 허가신청 서류

-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동력장치 설계도서
- 수문관측시설 명세
- 수수료 3만원(변경시 15,000원)

□ 동력장치 사용허가의 제한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해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기존 다른공 1일 적정 양수량의 20%이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 제한
- 불허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수문관측시설(온천공 관측시설) 설치

- 수문관측시설 설치의 필요성
 - 온천공의 수위변동 및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온천수 이용을 적절히 관리
 - 온천자원의 보다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온천자원의 고갈방지
 - 양질의 온천수를 계속적으로 유지
- 수문관측시설 설치방법
 - 수문관측시설 : 수위측정장치(관), 유량계, 온도계
 - 동력장치 설치시 설치하되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이내에 설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소·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천공으로부터 1m 이내에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서 설치토록 하기 바람
 - 수위측정관 설치는 내경이 30mm이상인 내열·내압성관으로 하되, 기준 수위로부터 150m이상의 심도까지 설치 할 것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1. 온천의 이용허가
2. 온천의 보전·관리



1 온천의 이용허가

1-1. 온천의 이용허가 (법 제16조, 영 제17조, 규칙 제10조)

-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 ▶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2호)
 - ※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3호)
- ▶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온천의 이용계획서
 -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목욕용 허가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허가의 기준

- 온천의 이용허가는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온천법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야 가능함

☞ 온천지침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수 공급은 온천법시행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므로 온천이용허가시 유념할 것(현재 미운영)

□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공중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온천허가량

- 온천이용허가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조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원칙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당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
 - 예외 : 온천수 이용량의 부족,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가 확보한 온천수의 1일 적정 양수량 범위내에서 가능

□ 온천허가 유효기간

- 온천이용허가는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온천이용허가 연장 불허
 - ⇒ 정기온천자원조사보고서를 이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제출

☞ 온천지침

- 온천원이용허가시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에서 허가 조치
- 온천이용허가시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1일 적정 양수량 검사 여부 철저히 확인하고 온천이용허가 연장신청시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 및 허가량 결정
- 온천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신청 서류중 「온천이용계획서」는 붙임1 서식을 사용
- 온천별 온천사용량에 대하여 반드시 공별 1일 결산을 하도록 계도하고 온천이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한 온천이용량을 월단위로 제출받아 과다사용 등을 확인
 - ※ 온천수를 이용허가량보다 과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온천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또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고발 조치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목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천법령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아 채수하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하수개발 허가일로부터 1년마다(기간종료 30일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기 바람
 -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개발허가시 위의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허가 조치

< 붙임 1 >

온천이용계획서

1. 이용목적

- 양질의 온천수를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용객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

2. 이용계획 개요

- 가. 이용신청자
- 나. 이용업소명
- 다. 이용기간
- 라. 이용허가신청량(1일)
- 마. 이용구분
 - ※ 이용은 목욕용, 음용, 산업용, 난방용으로 구분

3. 이용온천공 현황

- 가. 이용온천공 수
- 나. 온천공 소재지
- 다. 온천공 소유자(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
- 라. 온천공 검사기관
- 마. 온천공 검사기간
- 바. 1일 적정 양수량

4. 이용시설 현황

- 가. 이용시설현황(건축일자, 면적, 규모, 구조 등)
- 나. 이용시설별 온천공급계획
- 다. 동시수용능력(1일)
- 라. 온천이용 예상인원(1일)
 - ※ 온천수사용량은 1인 200~250ℓ 기준

5. 온천이용시설 도면 및 배관도(개략도)

1-2. 일시이용 허가 (영 제17조제4항)

□ 일시이용허가 요건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이용허가
- 온천우선이용권자이면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같은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은 목욕장·숙박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 ‘목욕장과 숙박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참고자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과 숙박시설 정의

-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숙박업 제외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숙박업 제외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이용허가량 기준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전 : 1일 적정 양수량의 50%

- 이용허가기간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정식 허가시까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기간 연장 가능
 - ※ 일시이용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 등 개발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법 제18조)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
 - ⇒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의 제한 명령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1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수질·성분 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3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
 - ⇒ 이용허가 취소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위 조항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함

법령해석사례 - 업종오인용어 사용 [온천법 제16조제4항]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음

[사 유]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8조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 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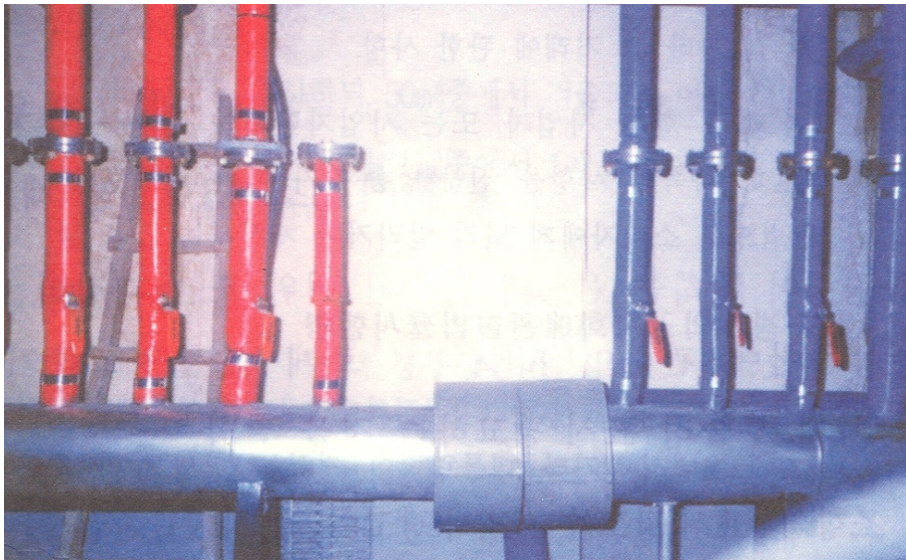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① 온천수 공급 배관관리

- 온천이용을 받은 자는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온천이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온천수 공급을 위한 배관 파이프라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온천이용시설 신규설치시 온천수 배관라인에는 빨강색, 지하수 배관라인에는 파랑색으로 표시(테이프 피복가능)
 - 기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수 또는 지하수 공급관로를 따라 2~3미터 간격으로 5cm내외의 테이프로 표시



②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수 이용에 대한 1일 관리대장 작성·비치

- 온천이용허가량에 의한 사용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공별로 온천수 사용량 등을 작성한 대장 관리

2 온천의 보전 · 관리

2-1. 온천자원의 보전 · 관리 (법 제24조, 규칙 제15조)

-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2호)
- ▶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 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음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 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1일 적정 양수량을 포함시킬 수 있음
 - ※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자원조사는 지구내 모든 공을 동일 기간내에 조사 실시
 - ※ 동일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의 온천공의 이용허가일이 다를 경우 발견신고 공의 이용허가일을 기준하여 동시 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온천관리대장상의 토지소유자 명시

- 온천관리대장에 발견신고자 인적사항이외에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온천공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 등을 확인하여 온천관리대장에 등재 조치

※ 온천관리대장 서식 :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온천지침

□ 온천자원관리 철저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온천이용시설에 공급 되는 온천수에 대하여 약품, 한약재 등 이물질(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첨가물)을 첨가할 경우 내용을 반드시 게시한 후 사용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청결한 온천수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이물질 첨가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 하여 온천성분의 임의조작 및 온천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2-2.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법 제24조의2, 영 제20조)

-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도입배경

- 국가자원인 온천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인력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관측장비에 의한 실시간 확인 후 자동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온천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 구축내용

- 온천공에 대한 온천수위, 수온 모니터링
-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들에 대한 사용량 수집
- 온천수 사용량과 수위관계 해석을 통한 온천수위 모델링
-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온천보고서 수집
- 전국 온천정보 수집
 - 온천수 허가량, 사용량, 수질, 성분, 온천수 열에너지 이용 현황
 - 온천장 시설현황, 의료적 효능, 전국 온천지구에 대한 지열류량 해석 등
- 온천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한 온천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 설치기준

- 전국의 이용중인 모든 온천지구 총 180개소 모두에 설치 또는 주요 온천부터 설치

구분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계
개소	71개소	109개소	총180개소

- 온천원보호지구 · 온천공보호구역 1개소당 1~2개공씩 관측시스템 설치

□ 수행기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안전부소관)에 의거 (특)한 국온천협회가 행안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

2-3.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법 제25조, 규칙 제18조)

-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음
-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출입검사의 취지

- 온천관리청은 온천자원의 보호와 온천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온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보고서만으로 불충분하거나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이용시설에 직접 들어가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출입조사의 시기

- 출입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적인 출입검사가 아닌 일시적 비정기적 검사를 뜻하는 것이며
- 출입조사는 꼭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함

□ 출입조사 방법

- 출입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검사실시 3일전에 미리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온천종사자 또는 시설관리자에게 출입검사의 일자, 검사사유, 검사내용, 검사자 등을 통보

- 출입조사시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시킨 후 조사 실시

□ 출입조사 공무원

- 법규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온천담당공무원 또는 출입조사에 필요한 공무원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의미함
- 출입조사 공무원은 아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분확인 후 조사

【온천출입검사원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8.11>

(앞 쪽)	(뒤 쪽)
제 호 온천출입검사원증 (유효기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div> 성 명 기 관 명	온천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 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15px;" type="text"/> 시장·군수·구청장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유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55mm×85mm[보존용지(1종)120g/㎡]

(색상 : 하늘색)

☞ 온천지침

정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온천이용시설
- 점검기준
 - 시·도 : 반기 1회이상
 - 상 반 기 : 2. 1 ~ 2월말(결과보고 3. 15까지)
 - 하 반 기 : 10. 1 ~ 10월말(결과보고 11. 15까지)
 - 시·군·구 : 분기 1회이상
- ※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점검결과를 실시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점검방법
 - 시설점검 : 건축업무담당 부서와 합동
 - 위생점검 : 보건·위생부서와 합동
- 점검내용
 - 온천의 온도
 -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 온천이용 허가량 초과 사용여부
 -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 온천이용 허위·과장광고 여부
 -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 결과조치
 - 필요한 사항의 적정 조치(법 위반시 고발조치, 행정조치 등)

2-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마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특이성분(유황, 유리탄산)에 대한 성분검사를 받아야 함
 -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 검사의 취지

- 온천수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온천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온천검사 절차 및 검사결과 게시 (규칙 제12조제2, 3, 4항)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
- 검사실시를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음

□ 검사기관·검사주기·검사항목 별표4

구 분	검 사 기 관	검 사 주 기	검 사 항 목
수질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연 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 기준 초과여부
성분검사	온천전문검사기관 (시장·군수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	매5년 1회이상(단 유향·유리 탄산 성분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유효기간 경과조치 : 성분검사기간과 정기자원조사기간이 동일년도인 경우 정기자원조사시 성분검사를 동시에 수행

예) 성분검사는 2010.1.5, 정기자원조사는 2010.8.5인 경우 성분검사는 2010.8.5. 까지 자동연장 됨

2-5.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 규칙 제11조)

- ▶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시장·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으로 허가하는 경우 그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별표3]을 적용

□ 온천목욕장 수질기준 (규칙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목욕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욕수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온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기준 적용을 받음
 - 원 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욕조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수질검사 방법

- 원수의 총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욕조수의 총대장균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에 의함
-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
 - 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
-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 멸균된 100ml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
 - 한번 채취된 시료는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
 -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

2-6. 온천의 공동급수 (법 제20조)

- ▶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음
- ▶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공동급수의 취지

- 동일 온천원보호지구내에 다수의 온천공 굴착 및 온천수의 과다 채수로 인한 온천원의 고갈 등을 예방하고
- 증대되는 온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온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채수·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임

(예) 수안보 온천 : 5개 온천공에서 27개 업소 공급

※ 행정기관에서 공동급수 조항을 근거로하여 온천공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사례 등 폐단이 있어 일부조항을 삭제하였음

☞ 온천지침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온천이용허가 등 온천관련 허가시 개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채납 행위 금지

□ 공동급수의 시행방법

- 시장·군수는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온천지침

공동급수 자격요건,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 (법 제20조)

-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2-7. 기타사항

□ 대도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

- 온천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시·도지사로 봄
- 〈 참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13개 지자체('09.11. 현재) 〉
 - 경기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특별시, 광역시 제외)

□ 시정요구 (법 제2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청 문** (법 제30조)

-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IV. 수수료 및 벌칙 등

1. 처리기간 및 수수료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3. 벌 칙
4. 과태료



1 처리기간 및 수수료 (법 제31조, 영 제15조)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30일	없음	
온천발견신고	10일	없음	
토지굴착등(변경) 허가	5일	신규굴착 : 공당 6만원 증 굴 : 공당 3만원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5일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지하수개발 허가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질·성분 검사	5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금액	수탁기관이 정한 수수료
온천이용허가	5일	건당 10만원	

※ 수수료 납부방법

- 해당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법 제5조제6항)

□ 처리기준

- 2차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법정판결 또는 심의 등에 의해 보고서상 허위내용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4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5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3 벌 칙 (법 제32조~36조)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토지를 굴착한 자 - 법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아니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 보양온천 지정을 받지 않고 보양온천 표시를 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온천관련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온천표시를 사용한 자 - 허위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없이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자 -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자원의 보전·관리등에 관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의무를 위반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온천원보호지구내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온천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때 	2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법 제36조

4 과태료 (법 제37조)

□ 과태료 부과대상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온천이용업소에서 검사결과 및 주의사항 등의 게시의무를 위반 한 때 (법 제19조제3항)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시장·군수가 요구한 온천시설 관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5조제1항)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법 제26조 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



V. 참 고 사 항



1. 온천전문검사 지침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3. 온천법령집
4.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v. 참고 사항

1. 온천전문검사 지침

목 차

I. 온천전문검사의 목적	101
II. 온천전문검사의 종류	102
1. 온천부존조사	102
2. 온천공검사	102
3. 온천공영향조사	104
4. 온천자원평가조사	105
5. 정기온천자원조사	106
6. 성분검사	107
III. 검사 항목 및 내용	109
1. 온천부존조사	109
1-1. 지형 및 수계조사	109
1-2.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109
1-3.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109
1-4.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109
2. 온천공검사	110
2-1. 지하수위 관측	110
2-2. 물리검층	111
2-3. 수중모터펌프 입회	111
2-4. 단계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112
2-5.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112
2-6. 장기 양수시험	113
2-7. 성분검사	113

3. 온천공영향조사	114
3-1. 영향의 정도	114
3-2. 온천공검사 실시	115
3-3. 영향비율 계산 및 적정양수량 산정	116
3-4. 온천원보호지구 혹은 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의 신규 온천굴착공 기준수위 ·	116
4. 온천자원평가조사	117
4-1. 온천공검사 실시	117
4-2. 온천공영향조사 실시	117
4-3. 1일 적정 양수량 및 온천개발면적 산정	117
5. 정기온천자원조사	118
5-1. 온천공 현황파악	118
5-2. 수량관측	118
5-3. 온천수위 관측	118
5-4. 양수시험	119
5-5. 성분분석	119
5-6. 적정 양수량 산정	119
6. 성분검사	120
6-1.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120
6-2.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120
6-3. 총고용물에 의한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천광천온천) ·	120
6-4.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121
 온천공검사 및 신고수리 추진체계	122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	123

IV.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127
1. 목적 및 관련근거	127
1-1. 목적	127
1-2. 관련근거(온천법)	127
2. 온천전문검사의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128
2-1. 위탁의 대상	128
2-2. 위탁운영 체계	128
2-3. 위탁계약 체결	129
2-4.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129
3. 온천전문검사 협의회 구성·운영	129
3-1. 목적	129
3-2. 임원구성	130
3-3. 업무 범위	130
3-4. 회의소집	130
3-5. 회의록 작성·보관	130
3-6. 의결의 효력	131
3-7. 온천전문검사 배분원칙	131
3-8.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종류별 우선권	131
4. 위탁운영 행정지원	132
4-1. 학술위원회 설치·운영	132
4-2. 자료의 보존	132
4-3. 회계 처리	132

5. 온천전문검사 추진체계	133
5-1. 온천부존조사	133
5-2. 온천공검사	134
5-3. 온천공 영향조사	135
5-4. 온천자원 평가조사	136
5-5. 정기온천자원조사	137
5-6.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138

【참고자료】

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139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40

I. 온천전문검사의 목적

-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 굴착되어 그 타당성을 온천전문검사로서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온천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온천법 제2조에 의한 온천의 정의는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하로부터 용출된다는 의미는 자연용출은 물론 시추공의 굴착을 통하여 인위적인 양수를 포함한다.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온천법에 의해 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발견신고공 및 보조공에 대하여 온천공검사를 실시하는데 용출온도,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분석 등을 평가한다.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이용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5년이며, 매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시행되는 온천자원조사는 적정 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 등을 재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온천공들간의 온천수 영향관계를 조사하여 적정 양수량을 조정하거나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 이 지침은 온천법에 의해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온천조사에 대한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그 운영 및 해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표준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온천전문 검사의 종류

1 온천부존조사

- 조사목적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시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 ①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意的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 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온천공검사

- 조사목적 :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text{NO}_3\text{-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_2Cl_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_2HCl_3)은 0.03mg/L 이하일 것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나. 1일 적정 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 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온천공영향조사

- 조사목적 : 기존 온천공 주위에 신규로 굴착된 개발공에 대한 조사로서 개발공과 인접된 온천공, 지하수공간의 수위 영향정도 판단 및 수위 영향 관계를 고려한 온천공(보조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조정을 위한 조사
- 관련근거 : 시행령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나. 1일 적정 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 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 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 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온천법 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4 온천자원평가조사

- 조사목적 : 온천발견 신고공을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보조공에 대한 온천공 검사 및 온천공영향조사를 통한 1일 적정 양수량, 온천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시행령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정기온천자원조사

- 조사목적 :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⑤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온천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②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 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1일 적정 양수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출시기 : 온천이용허가 만료일 30일 이전

6 성분검사

- 검사목적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 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27조 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연1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
성분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 성분(total S ⁻² 성분함량), 유리탄산(free CO ₂)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Ⅲ. 검사 항목 및 내용

1 온천부존 조사

< 조사개요 >

- ▶ 토지를 굴착하기 전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로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

1-1. 지형 및 수계조사

- 온천공을 굴착할 지역에 대한 지형, 수계, 굴착공 위치, 및 수계 범위에 대한 조사

1-2.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 조사지역에 대한 암석분포, 생성연대 및 지질구조에 대한 조사

1-3.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 굴착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온천공(반경 10km 이내) 및 지하수공(반경 300m 이내) 현황, 굴착심도, 적정양수량 등 조사

1-4.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 굴착할 시추공에 대한 굴착심도, 공경, 케이싱 설치심도에 대한 주상도

2 온천공 검사

< 검사개요 >

- ▶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 등을 평가. 검사항목으로는 조사공 내의 지하수위 관측, 온도 및 물리검층, 양수시험 및 성분분석 등이다. 온천공검사의 검사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2-1. 지하수위 관측

- 지하수위의 변화는 크게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적인 변화요인으로서는 기후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 장기적인 양수 및 달의 공전에 의한 대수층의 압력변화 등이 있다. 단기적인 변화요인으로서는 단기적인 채수, 1일 달의 인력(引力)변화, 지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따라 지하수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양수시험 전에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인 수위관측 통하여 기준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지하수위 관측은 15일 이상 조사공의 수위를 관측하여 1일 수위 상승(하강)율이 평균 0.5m 이내로 3일 이상 유지한 상태 하에서 단계양수시험 직전의 수위를 기준수위로 한다. 1일 수위 상승(하강)율이 계속 0.5m 이상일 경우에는 30일 까지 관측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된 수위를 기준수위로 본다. 만약 주위의 온천공 또는 지하수공의 양수에 의해서 조사공의 수위 상승, 하강이 1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 폭이 1m 이상인 경우는 기존공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온천공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100m 수위강하는 해수면으로부터 100m까지로 한다. 자연 용출인 경우는 용출되는

지점인 케이싱 상단부를 기준수위로 하며, 15일 이상 자연 용출시켜 용출율이 안정된 후 양수시험을 시작한다.

2-2. 물리검층

- 시추공 내의 지질상황 판단은 시추할 때에 회수되는 암석의 코아를 감정함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코아가 없을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감정하게 되는데 이들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리검층이다. 이 물리검층의 방법에는 온도검층, 자연감마선검층, 전기전도도검층, 전기검층 등이 있으며, 시추공 내의 지온경사, 굴착 심도 확인, 대수층 구간 파악, 케이싱 설치구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온천공검사시 물리검층은 온도검층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물리검층을 실시한다.

2-3. 수중모터펌프 입회

- 수중모터펌프 설치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입회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장비설치의 확인 및 그 이외의 목적으로 부착되는 장비가 없도록 확인한다. 설치장비는 한 개의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며, 용량은 수위강하 100m 내외를 강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수위측정관은 기준수위로부터 150m 이상 설치하며, 내경은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토출관 상단부에는 압력계(10kgf/cm² 이상), 수량조절 밸브 및 유량계(오리피스 등)를 부착하며, 수량조절에 따른 과다압력 방지를 위해 보조 토출관(내경 2인치 이상)을 설치한다.

2-4. 단계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 조사공의 비수위강하 등을 산출하며, 이에 따른 적정양수량 산정 등을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
-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양수율을 변화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한다.
- 최대 양수율은 수위강하가 100m 내외가 되는 양수율로 하며 수중펌프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중펌프의 최대용량 이내에서 결정한다.
- 첫 단계의 양수시간은 1,000분 이상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240분 이상으로 한다. 각 단계가 수위회복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양수시험이므로 로그가중평균법 등을 이용하여 양수시간을 보정하여 해석한다.
- 또한, 단계양수시험은 각 단계별 양수율이 일정율이 아닌 자연감소율로 시험할 수 있다.
- 단계양수시험 후 회복수위를 계속 관측하여 수위강하량의 95% 이상 수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2-5.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 단계양수시험을 통하여 48시간 후의 단계별 예측수위를 구하고, 양수율과 예측수위 관계를 이용하여 수위강하식

$$s_w = BQ + CQ^n$$

을 산출한다.

- 조사공의 수위강하(s_w)가 100m일 때의 양수율(Q_{100})을 구한다.
- 단계양수시험 후 수위회복 그래프에서 t'_{95} (총수위강하량에서 95%까지 회복될 때의 시간)를 구한다.

- 1일 적정 양수량(Q_s)은

$$Q_s = 150 + (Q_{100} - 150) \times \frac{t_{sc}}{t_{sc} + t'_{95}} \quad (\text{단, } Q_{100} \geq 150)$$

150 : 온천공의 최소 적정양수량(m^3/day)

t_{sc} : 마지막 단계양수율 최종보정시간

로 산정한다.

- 단, 1일 적정 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시의 최대양수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Q_{100} 이 $150 \text{ m}^3/\text{day}$ 미만인 경우 적정양수량은 Q_{100} 으로 한다.

2-6. 장기 양수시험

- 단계양수시험에서 산정된 적정양수량 범위 내에서 48시간 양수하며, 수위강하, 양수온도 등을 확인하여 적정양수량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용출온도 : 1일 적정 양수량으로 양수할 때 24시간 이후의 양수온도 중 최저 온도를 의미하며 $^{\circ}\text{C}$ 로 표기한다. 온천법에서 정한 “ 25°C 이상의 온수”는 이 용출온도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2-7. 성분검사

- 온천수에 함유된 성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질 유형을 분류
- 양수시험시 현장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분석을 실시한다.
- 검사기관 및 검사항목
 - 온천전문검사기관 : 수질 유형을 분류하는 이온성분 분석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3 온천공영향조사

< 조사개요 >

- ▶ 온천공영향조사는 신규로 굴착된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기존 온천공 및 지하수공에 대한 조사로서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기간동안 신규온천공과 인접된 기존의 온천공, 지하수공간의 수위 영향정도 판단 및 수위 영향관계를 고려한 보조공의 1일 적정양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온천공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3-1. 영향의 정도

- 양수시험시 수위강하는 양수정에서 급격하게 발생되며 양수정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수위강하는 적게 나타난다. 그림 3-1은 양수정에서 양수시험시 일정 시간 경과후 나타날 수 있는 수위강하의 단면도이며, 그림 3-2는 이를 3차원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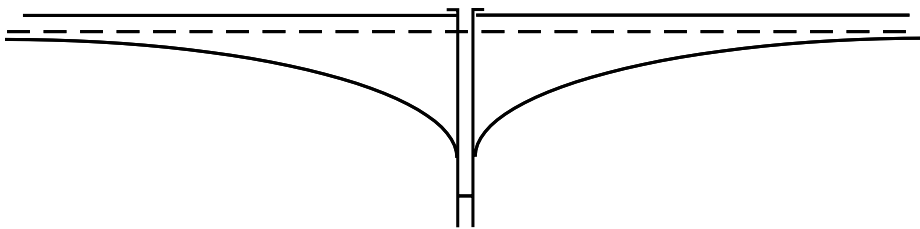


그림 3-1. 양수시 일정시간 경과 후의 수위강하의 단면도

- 조사공에서 양수를 실시하고 어느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그림 3-1과 같이 수위강하가 발생되는데 이 주위에 기존 온천공이 있는 경우 기존 온천공에서

도 수위강하가 발생된다. 기존 온천공이 조사공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수위강하가 많이 발생되며, 먼 곳에 있는 경우는 수위강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된다. 따라서 이를 두 공간의 영향의 정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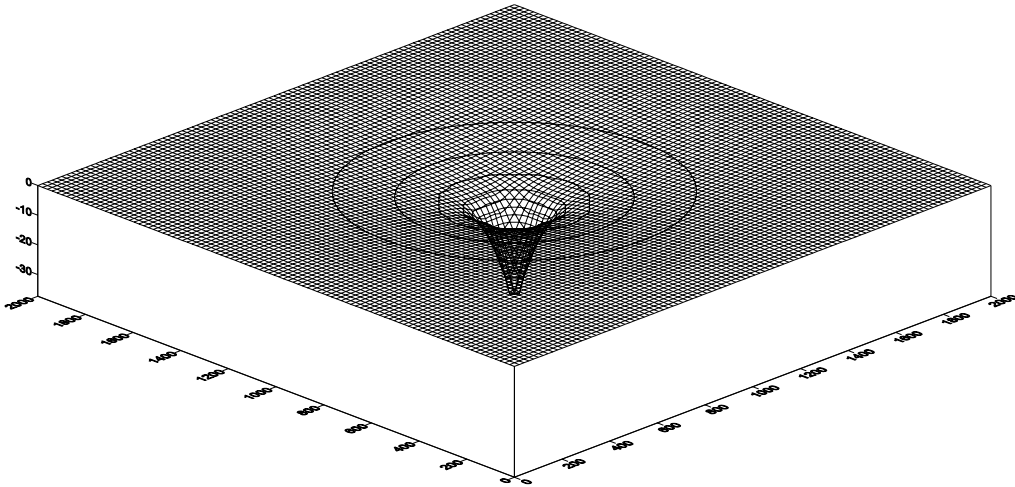


그림 3-2. 양수시험시 수위강하의 3차원 모형

3-2. 온천공검사 실시

- 검사공의 적정양수량을 산출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온천공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공의 주변 공들과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1일 적정 양수량(Q_{s+e})”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Q_{s+e} = 150 + (Q_{100} - 150) \times \frac{t_{sc}}{t_{sc} + t'_{95}} \quad (\text{단, } Q_{100} \geq 150)$$

150 : 온천공의 최소 적정양수량(m^3/day)

- Q_{100} 이 $150 \text{ m}^3/\text{day}$ 미만인 경우 Q_{s+e} 는 Q_{100} 으로 한다.

- 단, Q_{s+e} 는 단계양수시험시의 최대양수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3-3. 영향비율 계산 및 적정양수량 산정

- 조사공의 Q_{s+e} 로 2일간 장기양수시 주위의 기존 공들에서 영향수위를 관측하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의 수위강하를 “최대영향수위(s_{\max})”라 한다.
- 조사공이 기존공에 미치는 “최대영향비율(e_{\max})”은

$$e_{\max} = s_{\max} / s_w \times 100(\%)$$
 으로 표현한다.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미치는 영향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 $e_{\max} \geq 2\%$ ” 일 때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 주변공과의 영향을 제거한 조사공의 “1일 적정 양수량(Q_s)”은

$$Q_s = Q_{s+e} (1 - e_{\max})$$
 으로 한다.

3-4. 온천원보호지구 혹은 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의 신규 온천굴착공 기준수위

- 기존 온천공들을 계속 사용하여 온천지구 전체의 수위가 해수준면 아래에 있는 경우 신규 온천굴착공의 기준수위는 해수준면으로 한다.

4 온천자원평가조사

< 조사개요 >

- ▶ 한 지역 내에 2개 혹은 3개 이상의 온천공을 굴착시 각 공의 온천공검사, 온천공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온천자원 평가조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한다. ※ 갈수기, 풍수기 포함의미

4-1. 온천공검사 실시

- 한 지역에 최초로 발견된 온천발견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한 “온천공검사”를 실시한다.

4-2. 온천공영향조사 실시

- 온천발견신고공을 제외한 온천굴착공에 대해 “온천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공의 영향을 제거한 적정양수량을 산출한다.

4-3. 1일 적정 양수량 및 온천개발면적 산정

- 한 지구 내의 총적정양수량(Q_{st})은 각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Q_s)의 합으로 한다.
- 온천개발면적(A) 산정은

$$A(m^2) = 66.2 \times Q_{st}$$
 으로 한다.

5 정기온천자원조사

< 조사개요 >

- ▶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최초 온천이용허가일로 기준하여 동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모든 온천공을 함께 조사한다. 온천원보호지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하며, 온천공보호구역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5-1. 온천공 현황파악

- 온천원보호지구 등에 있는 온천공들의 위치, 소유자, 심도, 공경, 기 적정양수량 등을 파악한다.

5-2. 수량관측

-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수량을 관측한다.

5-3. 온천수위 관측

-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위변화를 관측한다.

5-4. 양수시험

- 온천공들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양수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양수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량관측 및 온천수위 관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5-5. 성분분석

- 온천수에 대한 수온, 현장분석 및 실내분석을 실시한다.

5-6. 적정 양수량 산정

- 사용량과 수위강하 : 사용량에 따른 수위변화 관계를 파악하여 온천수 사용시의 수위강하, 중단시의 회복수위를 해석한다.
- 사용량과 회복수위 관계 해석 : 사용량이 각기 다른 여러 1일 사용량과 회복수위(개발당시의 기준수위 또는 해수준면을 기준) 관계로 다음과 같은 회복수위(s')식을 산출한다.

$$s' = BQ$$

B : 대수층 손실상수, Q : 1일 사용량

- 회복수위가 100m 이상인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의 수위초과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수위초과율(%) = 회복수위(m) - 100(m)
- 수위초과율(%)은 성수기와 비수기 등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하므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및 평균값으로 표기한다.
- 회복수위가 100m 이상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온천수 보전을 위하여 온천수 이용 허가량을 감해야 하며, 허가량을 감하는 정도는 “평균 수위초과율(%)×0.1”로 한다.

6 성분검사

< 검사개요 >

-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한다.

6-1.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3.0 미만	산성
3.0 ~ 6.0 미만	약산성
6.0 ~ 7.5 미만	중성
7.5 ~ 8.5 미만	약알칼리성
8.5 ~	알칼리성

6-2.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주요 이온성분(양이온성분 Na, Ca, Mg, K; 음이온성분 Cl, SO₄, HCO₃, CO₃)을 meq/l 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성분 각각을 100%로 비교하여 25%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한다. 이 때 25%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놓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

예) Na(Ca)-HCO₃(SO₄) 형

6-3.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염광천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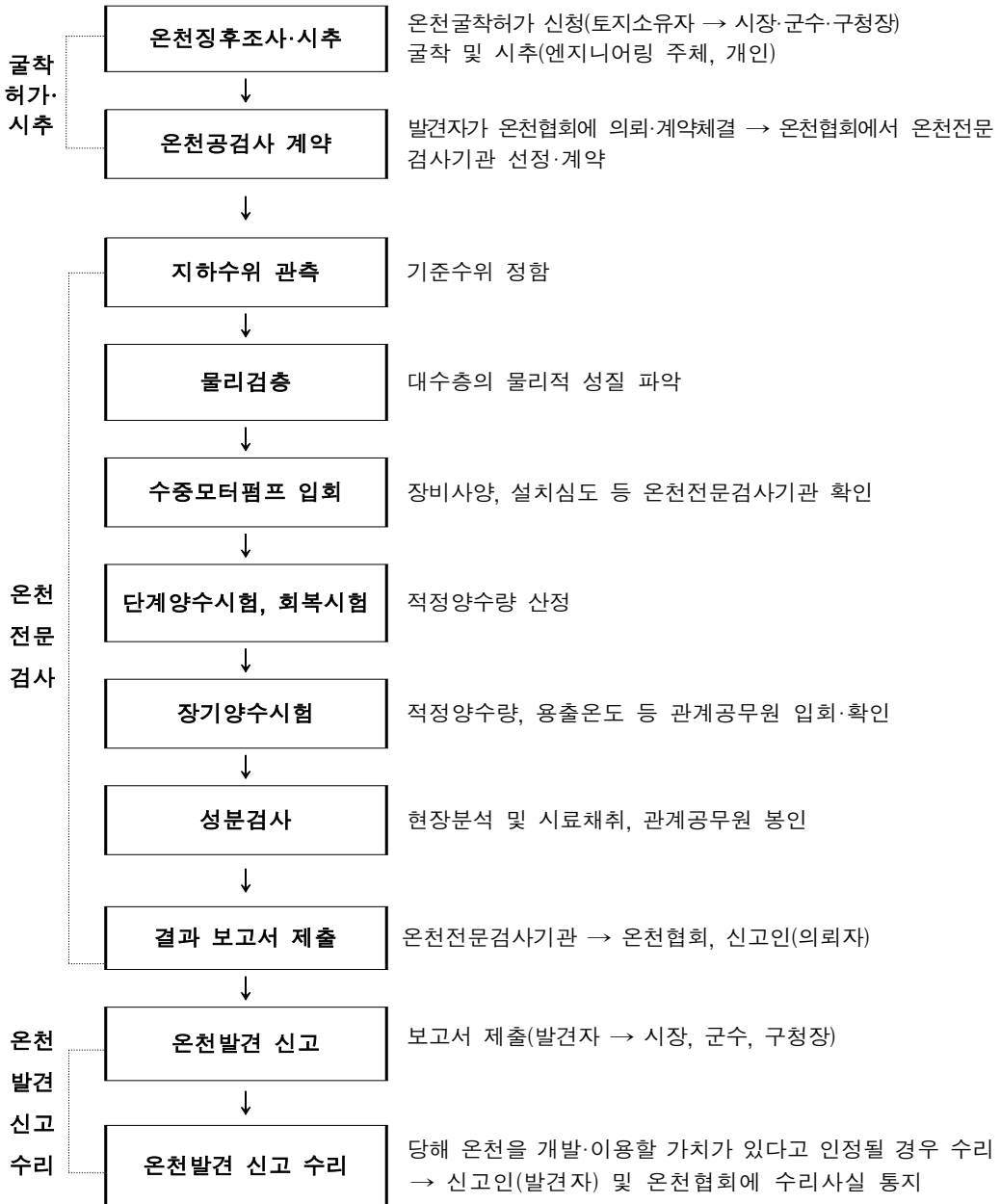
- 염화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l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l 형인 경우를 염화물광천온천이라 한다.

- 황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l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SO₄ 형인 경우를 황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탄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l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O₃ 형인 경우를 탄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6-4.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분의 기원이 오염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싱의 영향 등일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황온천** :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total S⁻² 성분함량이 0.1mg/l 이상인 온천을 유황온천이라 한다(이 때 SO₄⁺²성분은 황산이온성분으로 따로 표시한다). total S⁻² 성분함량은 S⁻², HS⁻, H₂S로 이루어지며, 대수층의 상태가 환원상태임을 의미한다.
 - **탄산온천** : 탄산가스(CO₂) 성분을 250mg/l 이상 함유한 경우를 탄산온천이라 한다.
 - **실리카온천** : 실리카(SiO₂)성분의 함량이 40mg/l 이상인 온천
 - **철온천** : 철(Fe)성분의 함량이 10mg/l 이상인 온천
 - **구리온천** : 구리(Cu)성분의 함량이 1mg/l 이상인 온천

온천공검사 및 신고수리 추진체계



□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

- 다음의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는 엔지니어링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사는 각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각 온천전문검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검사비용 또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온천부존조사 】

종별	규격	물량	단위	총액	직접 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
지형 및 수계조사		1	지역	871,157	537,157	-	334,000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1	"	1,037,368	771,157	8,211	258,000
인근지역 온천현황조사		1	"	464,906	388,906	-	76,000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1	"	1,589,815	1,163,815	-	426,000
-		1	"	-	-	-	-
보고서작성		1	식	978,580	578,580	-	400,000
소 계				4,941,826	3,439,615	8,211	1,494,000
제경비		0.6487354		2,234,400			
기술료		0.2		1,134,203			
합계				8,307,429			
부가가치세		0.1		830,742			
총계				9,138,171			

【 온천공검사 수수료(1개공) 】

종별	규격	물량	단위	총액	직접 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
지하수위관측		1	공	2,076,974	1,742,074	900	334,000
물리검층		1	공	2,360,835	1,993,194	109,641	258,000
장비입회		1	공	853,812	777,812	-	76,000
단계양수시험		1	공	4,577,208	3,752,651	39,217	785,340
장기양수시험		1	공	4,748,028	3,497,251	40,267	1,210,510
보고서 작성		1	식	1,655,324	1,255,324	-	400,000
소계				16,272,181	13,018,306	190,025	3,063,850
제경비		0.6487354		8,445,435			
기술료		0.2		4,292,748			
합계				29,010,364			
부가가치세		0.1		2,901,036			
총계				31,911,400			

*단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증모타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임
*의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본 원가계산에 의거 산정.

【 온천공영향조사 수수료(조사공 1개공, 관측공 2개공이하) 】

종별	규격	물량	단위	총액	직접 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
가. 온천공검사							
지하수위관측		1	공	2,501,694	2,137,694	30,000	334,000
물리검층		1	공	2,190,991	1,814,961	118,030	258,000
장비입회		1	공	853,812	777,812	-	760,000
단계양수시험		1	공	4,577,208	3,752,651	39,217	785,340
장기양수시험		1	공	4,748,028	3,497,251	40,267	1,210,510
나. 온천공영향조사							
영향장기양수시험		1	식	6,187,875	5,519,875	-	668,000
다. 보고서 작성							
소 계				24,528,301	20,368,937	227,514	3,931,850
제경비		0.5921018		12,060,484			
기술료		0.3		9,728,826			
합계				46,317,611			
부가가치세		0		-			
총계				46,317,611			

*단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증모타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임

*의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본 원가계산에 의거 산정

【 온천공영향조사 수수료(조사공 1개공, 관측공 3개공이상) 】

종별	규격	물량	단위	총액	직접 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
가. 온천공검사							
지하수위관측		1	공	2,501,694	2,137,694	30,000	334,000
물리검층		1	공	2,190,991	1,814,961	118,030	258,000
장비입회		1	공	853,812	777,812	-	76,000
단계양수시험		1	공	4,577,208	3,752,651	39,217	785,340
장기양수시험		1	공	4,748,028	3,497,251	40,267	1,210,510
나. 온천공영향조사							
영향장기양수시험		1	식	15,469,688	13,799,688	-	1670,000
다. 보고서 작성							
소 계				30,341,421	25,780,057	227,514	4,333,850
제경비		0.5691434		14,672,549			
기술료				8,090,521			
합계				53,104,491			
부가가치세				-			
총계				53,104,491			

【 xx지역 온천자원평가조사(온천발견신고공 제외 2개공기준) 】

종별	규격	물량	단위	총액	직접 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
가. 온천공검사							
지하수위관측		2	공	4,153,948	3,484,148	1,800	668,000
물리검층		2	공	4,721,670	3,986,388	219,282	516,000
장비입회		2	공	1,707,624	1,555,624	-	152,000
단계양수시험		2	공	9,154,416	7,505,302	78,434	1,570,680
장기양수시험		2	공	9,496,056	6,994,502	80,534	2,421,020
나. 온천공영향조사							
영향장기양수시험		1	식	6,187,875	5,519,875	-	668,000
다. 온천부존조사							
지구답사		1	식	1,536,875	1,298,355	2,520	236,000
원격탐사		1	식	2,527,589	2,512,889	14,700	-
지질조사		1.5	km ²	5,046,722	4,544,242	7,480	495,000
물리탐사							-
-극저주파 탐사		5	측선	3,572,935	2,163,915	246,720	1,162,300
-전기비저항 수직탐사		5	측점	3,408,020	1,403,050	371,620	1,633,350
-전기비저항 쌍극자탐사		5	측선	7,756,075	4,334,255	287,620	3,134,200
수리지질조사		1	식	9,881,109	7,981,708	53,901	1,845,500
라. 보고서 작성				10,566,271	9,066,271	-	1,500,000
소 계				79,717,185	62,350,524	1,364,611	16,002,050
제경비		0.6891519		42,968,982			
기술료		0.2		21,063,901			
합계				143,750,068			
부가가치세		0.1		14,375,006			
총계				158,125,074			
*단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증모타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임							
*의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본 원가계산에 의거 산정							
*단, 온천자원평가조사에서의 온천공영향조사는 공간의 영향을 고려한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각 조사기관마다 조사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							

【 xx지역 정기온천자원조사(1개공) 】

(금액단위:원)

종별	규격	물량	단위	총액	직접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
온천수사용량조사		1	공	2,020,658	1,549,607	166,267	304,784
지하수위관측조사		1	공	1,681,431	1,464,596		216,835
성분검사		1	공	473,055	273,556	9,166	190,333
보고서작성			식	726,935	664,223		62,712
소 계				4,902,079	3,951,982	175,433	774,664
제경비		1.1		4,347,180			
기술료		0.2		1,659,832			
합 계				10,909,091			
부가가치세		0.1		1,090,909			
총 계				12,000,000			

*장비교체, 동력사용, 수위관측관설치 등 조사에 필요한 기존시설에 대한 각종 부대경비는 의뢰자가 부담함
 *상기단가는 최소한의 조사에 대한 단가로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동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조사공이 있는 경우 2번째 조사공 부터는 위 기준단가의 20% 이내로 감조정 할 수 있음
 (단, 양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지않고, 기준단가에 조사공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xx지역 정기온천자원조사(전체지구) 】

종별	규격	물량	단위	총액	직접 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
가. 기본현황조사							
지구답사		1	지구	1,577,660	1,384,740	10,920	182,000
온천공현황조사		1	지구	3,731,025	3,231,060	13,965	486,000
온천수사용량조사		1	지구	18,590,203	11,501,578	5,252,625	1,836,000
나. 지하수위관측조사		10	개월	51,076,610	43,696,610	-	7,380,000
다. 양수시험(성분검사포함)		5	공	54,629,215	44,574,190	397,425	9,657,600
라. 적정양수량 분석		1	지구	10,083,695	9,994,235	89,460	0
마. 보고서 작성				18,498,830	16,498,830	-	2,000,000
소 계				158,187,238	130,881,243	5,764,395	21,541,600
제경비		0.707 1433		92,551,791			
기술료		0.2		44,686,606			
합계				295,425,635			
부가가치세		0.1		29,542,563			
총계				324,968,198			

*단, 장비교체 및 동력사용등 시험에 필요한 각종 부대경비는 의뢰자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임
 *성분검사대상공수는 5개공 기준으로 하며, 1개공 추가시 이에 대한 금액은 별도 계상함
 *상기단가는 가장 일반적인 조사내용에 대한 단가로 필요에 따라 추가 항목을 별도 계상할 수 있음
 *지하수위관측공의 수는 대략 5~6개공 정도이며, 양수시험은 5개공에 대한 단가임

IV.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1 목적 및 관련근거

1-1. 목적

-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특)한국온천협회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사과정에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

1-2. 관련근거(온천법)

-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②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 ② 「온천법」 제2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 자원관측 사무를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2 온천전문검사의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2-1.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2-2.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협회에 온천 전문검사 위탁
- 위탁받은 온천협회는 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전문검사 운영내규에 따라 온천 전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온천전문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와 약정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 기일내 검사보고서 작성·제출
- 협회는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시 위탁을 의뢰한 자에게 검사 결과 통보

2-3. 위탁계약 체결

- 행정안전부가 정한 온천전문검사의 종류별 품셈표를 적용하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2-4.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정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발생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온천협회 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3 온천전문검사 협의회 구성·운영

3-1. 목 적

- 온천전문검사의 위탁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적정한 배분·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 등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2. 임원 구성

- 협의회장 : 온천협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 위 원 : 온천전문검사기관(온천협회 특별회원 기관)의 대표 (공공기관인 경우 관련자)를 위원으로 구성
- 간 사 : 온천협회 사무처장
- ※ 협의회는 행정적·기술적 자문 등을 위해 학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음

3-3. 업무 범위

- 온천협회가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온천전문검사의 배분·할당 및 검사 순번의 결정
- 온천전문검사 관련 행정적·기술적 사항의 자문 및 협의
-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협의 등

3-4. 회의 소집

- 정기 회의 : 익년도 온천전문검사 수요에 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순서 배정을 위하여 연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소집
- 수시 회의 : 현안 또는 긴급사항의 발생이나 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협의회장이 소집

3-5. 회의록 작성·보관

- 간사는 정기·수시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10년 이상 보관

3-6. 의결의 효력

- 협의회 의결효력은 의사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발생이나 신속한 회의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결정 후, 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함

3-7. 온천전문검사 배분원칙

- 연간 계획된 온천전문검사의 총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온천전문검사 기관간 적정 배분 수행 원칙
- 연간 적정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여 신규 조사 소요가 있을 시는 전체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재적정 배분하여 추진
- 온천전문검사기관별 검사 배분의 우선순위는 협의회에서 정한 순서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행정안전부 등록순서에 의함
- 당해 순서의 검사에 대한 수행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한이 이양되며, 원래 순서의 권한은 소멸 됨

3-8.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종류별 우선권

- 온천부존(징후)조사 : 온천굴착허가신청자가 선정한 온천전문검사기관
- 온천공검사 : 온천굴착허가자(시장·군수)가 선정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을 우선으로 하되, 연속적인 중복 배분사유 발생시 차순위 온천전문검사기관이 검사 수행
- 온천공 영향조사 : 온천공 조사에 포함된 영향조사는 온천공검사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우선권 부여, 별개의 온천공 영향 조사는 예정순위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
- 온천자원평가조사 : 예정순위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되,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내 온천자원평가조사는 온천발견 신고공을 조사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우선권 부여

- 정기온천자원조사 : 예정순위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되, 동일년도의 인접지역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조정
- 성분검사 : 당해 온천공에 대한 정기온천자원조사를 수행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

4 위탁운영 행정지원

4-1. 학술위원회 설치·운영

-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의 감리·감독 및 기술자문 역할 수행
-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절차 등 제정·시행
- ※ 학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온천협회 정관으로 규정

4-2. 자료의 보존

- 온천전문검사보고서 및 각종 조사결과를 기재한 온천전문검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
-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등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결과는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에 활용

4-3.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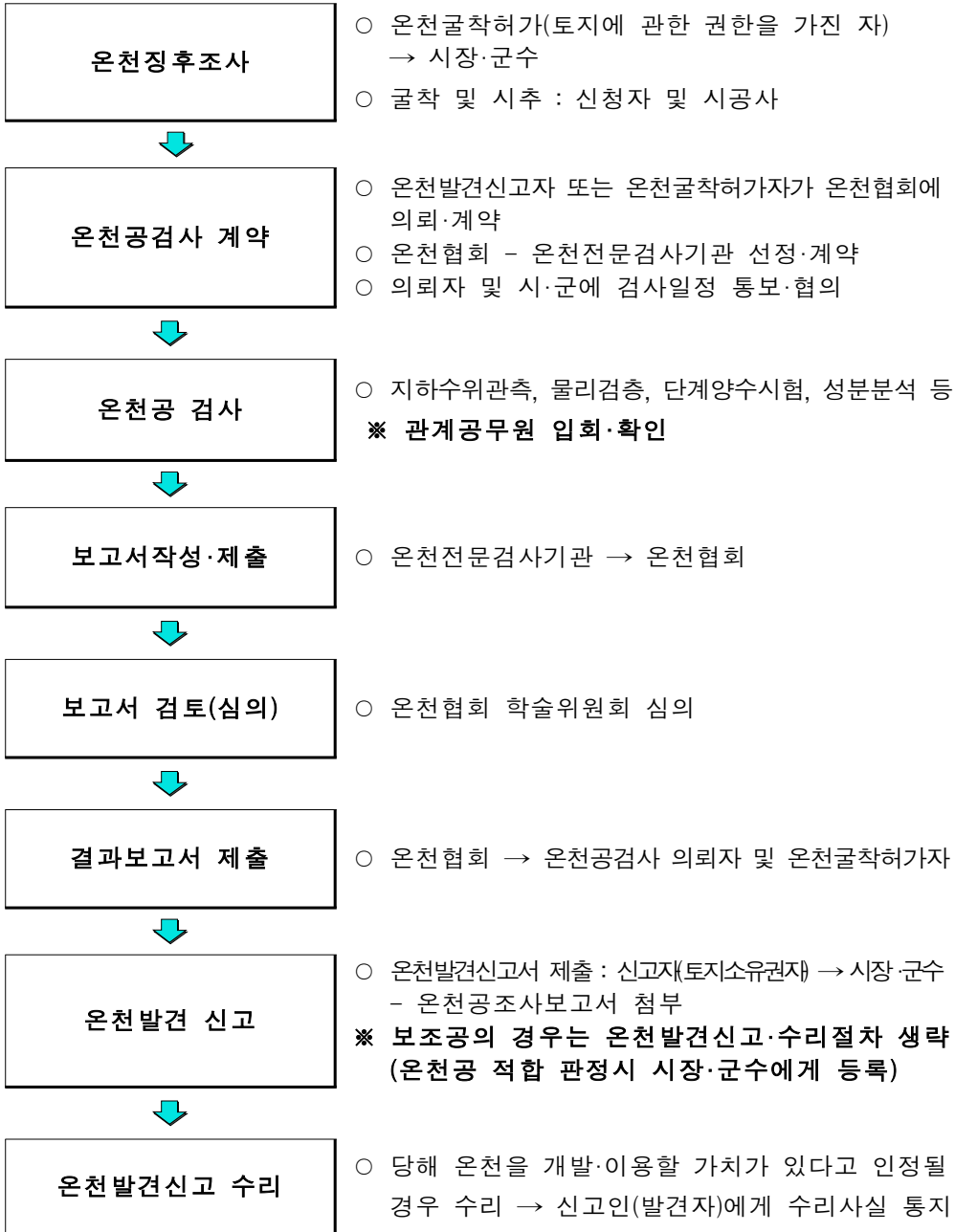
- 온천전문검사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운영
-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온천전문검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5 온천전문조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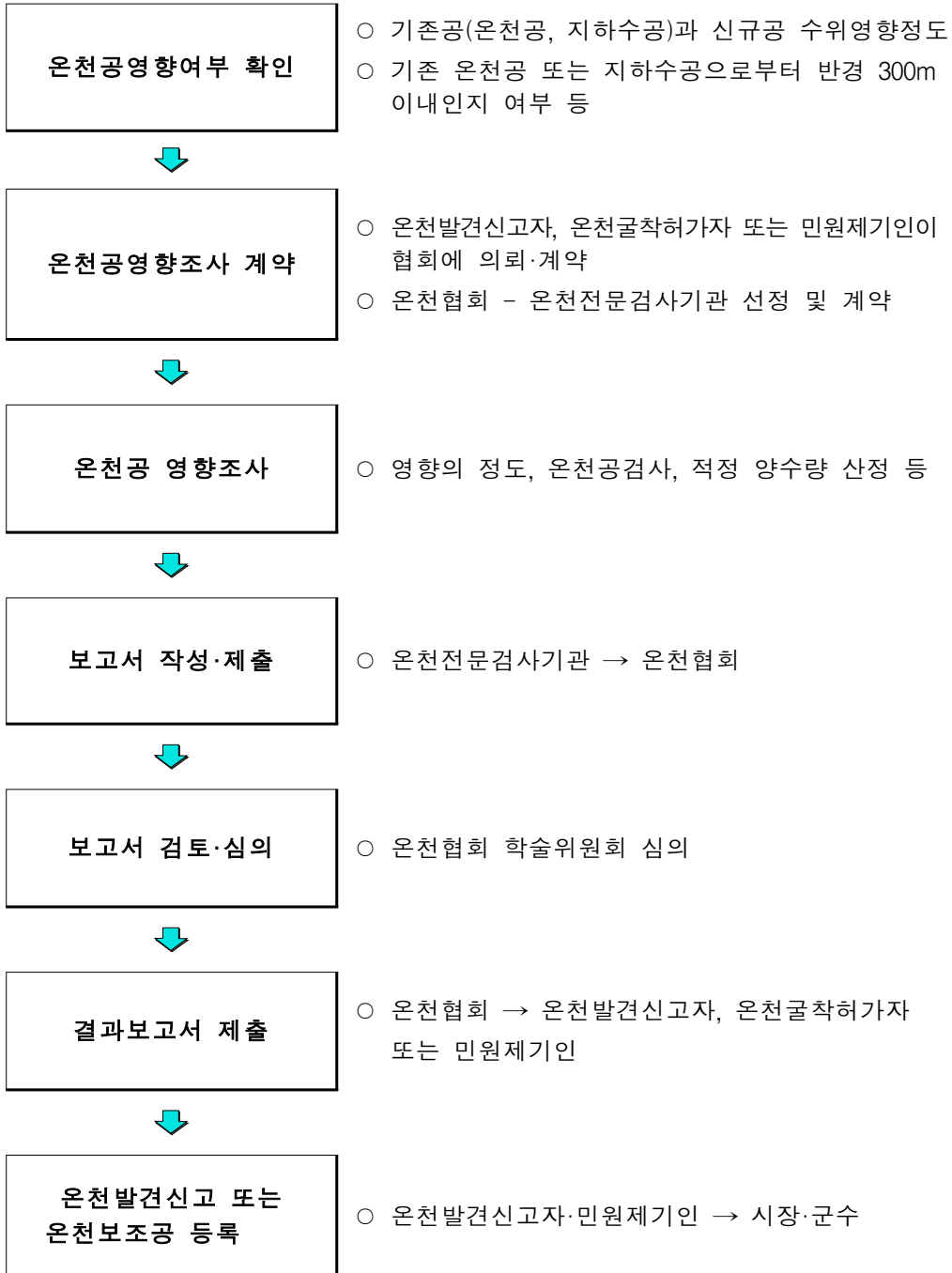
5-1. 온천부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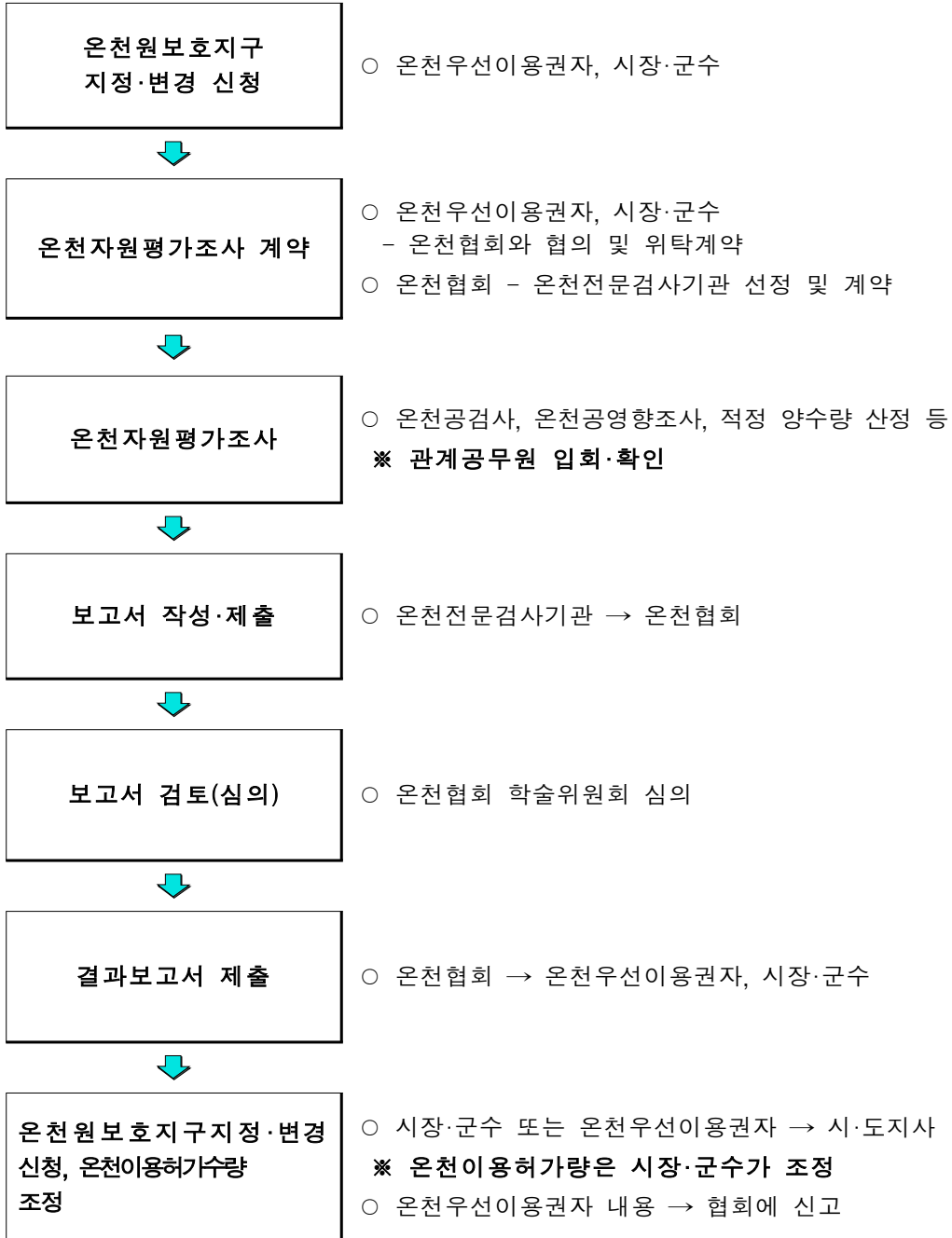
5-2. 온천공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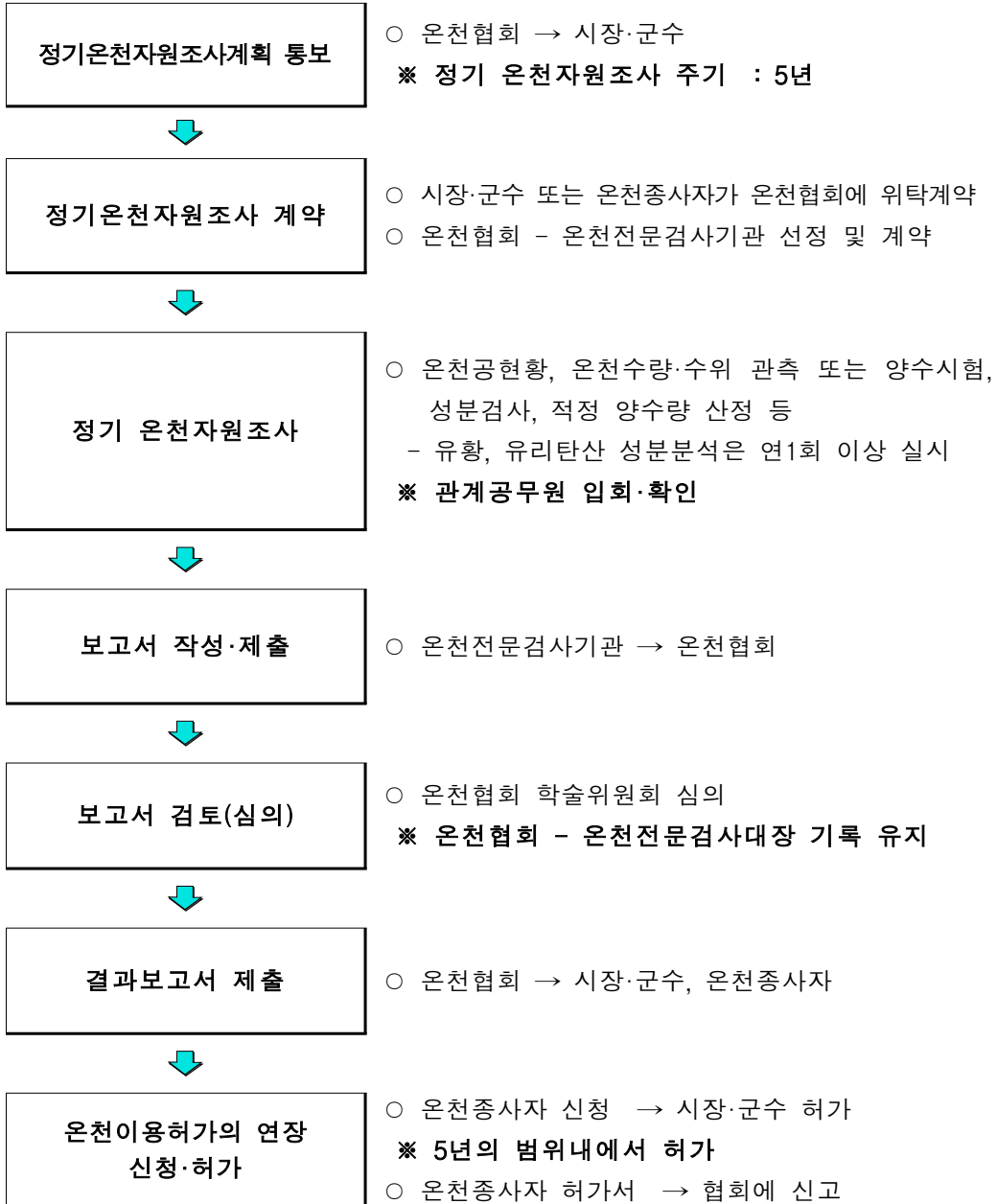
5-3. 온천공영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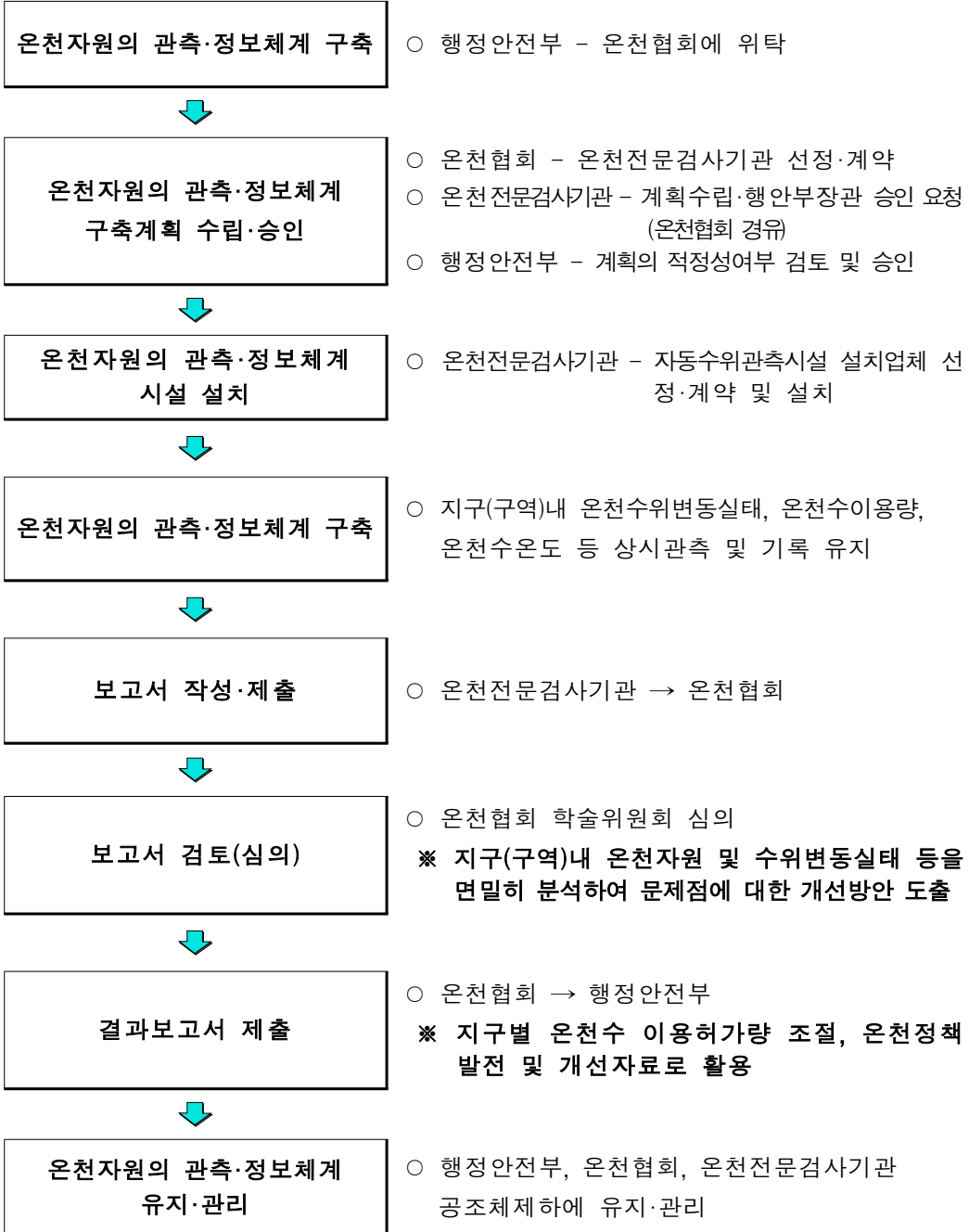
5-4. 온천자원 평가조사



5-5. 정기온천자원조사



5-6.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참고 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별표 5] <개정 2010.8.11>

❖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참고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별표 1의2] <개정 2010.8.11>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온천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2차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1 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3 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4 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7 조 제 3 항 제 5 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V. 참 고 사 항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10.10.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7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온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시간) ①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 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기타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5. 교육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시장·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온천종사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온천사업자는 이 지침 시행일부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온천종사자 교육소집 통지서

수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00년에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 소집을 통지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불참시에는 온천법 제 37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교육일시				
교육장소				
준비물				

2000년 0월 0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일지라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교육연기원

영 업 장	온천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개시일		전화번호	
공 중 위 생 관 리 책 임 자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성별	
	직위		지정일	
교육일시				
<p><u>연 기 사 유</u></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서명)</p> <p>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귀하</p>				

※ 교육연기원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입력하거나, 팩스(02-723-5003)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수 료 증

(온천종사자 교육)

온 천 명 :

영업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0000년도 온천종사자 교육을 수료 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

교육일자 :

번호	온천명	소재지 (시·군까지)	대표자 성명	참석자		접수자		비고
				성명	서명	교육비	수료증	

[별지 제6호서식]

교육실시결과보고서

2010. . . .

수신 :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장

제목 : 온천종사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온천법 제26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실시현황

구분 시·군·구별	대상 인원	참가자		불참자			비고
		인원	비율(%)	계	신고	무단	
계							

라. 참가자 및 불참자 인적사항.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인)

V. 참고 사항

3. 온천법령집

v. 참 고 사 항

4.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 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374호, 2010. 6.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0.6.30>

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천수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성분	총고용물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합량 1000mg/ℓ 이상		
		유황	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H ₂ S, S ₂ O ₃ , HS ⁻) 합량 1mg 이상		
		유리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mg/ℓ 이상		
수량	이용허가수량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최소 210m ³ /일 이상 · 운동욕장 50m ³ /일 이상 · 온천욕장 160m ³ /일 이상	절대조건	
보양온천시설	시설	건강시설 (총연면적 1,000m ² 이상)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 보행욕 · 보디 샤워 · 넥샤워 · 플로팅 · 릴렉스 라이닝 3. 운동실 4. 릴렉스 존 5. 수영장	· 1급 응급구조사 상주 · 욕조바닥 면적 100m ²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5종 이상 운동기구 · 수면실 외 교류 장소 · 길이 25m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절대조건
		기본시설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 4. 사우나실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 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m ² 이상 · 건식, 습식	
		부대시설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보양온천환경	주변환경	필수사항	1. 야외공기 청정도 2. 실내공기 청정도 3. 실내 소음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절대조건
		권장사항	1. 경관이 수려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 상수도시설 상태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 중 60% 이상

[별표 2]

보양온천 표시(제5조 관련)



비 고

1. 보양온천 표시 : 파란색(Cyan 100%)

2. 글씨 : 흰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보양온천 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light gray,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a light gray border. It contains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from top to bottom.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light gray,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a light gray border. It contains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from top to bottom.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a light gray border. It contains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from top to bottom.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light gray,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2011 온천업무 편람

인 쇄 : 2011년 3월 일

발 행 : 2011년 3월 일

편집총괄 생활공감정책과장 이성인

편집정리	서기관	김윤희
	서기관	김원석
	사무관	황승완
	행정주사	김길수

발행처 : 행정안전부

Tel. 02) 2100-3833

Fax. 02) 2100-3834

인쇄처 : 사회문화사 (02-737-2400)